발 간 등 록 번 호
전북교육 2019 - 193

새롭게 빛나는 전북교육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따뜻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2019. 학생생활교육 계획

2019. 2.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민 주 시 민 교 육 과 |

【 목 차 】

Ⅰ. 2019학년도 학생생활교육 기본 방향 ····· 1

1. 학생생활교육 목표 ····· 1

2. 학생생활교육 추진 방향 ····· 1

Ⅱ. 중점 추진 과제 ····· 2

【중점1】 소통과 공감 따뜻한 학교 문화 조성

1-1. 따뜻한 관계 교육공동체 형성 ····· 5

1-2. 나눔과 체험교육 활성화(봉사, 체험, 청소년단체) ····· 6

1-3. 관계와 회복 중심 생활교육 강화 ····· 13

1-4. 내실 있는 유형별 예방교육 강화 ····· 20

【중점2】 학교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구축

2-1. 단위학교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 26

2-2. 공정하고 적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 29

2-3. 학생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 52

【중점3】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3-1. 소통과 공감 따뜻한 학생 상담활동 강화 ····· 56

3-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강화 ····· 60

▣ 부 록 ····· 64

1. 2019학년도 월별 학생 생활교육 업무 추진 일정 ····· 65

2. 각종 서식 및 참고 법령 ····· 66

Ⅰ. 2019학년도 학생생활교육 기본방향

1. 학생생활교육 목표

따뜻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따뜻한 학교	평화로운 학교	행복한 학교
소통과 공감의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구축**	**위기 학생지원을 위한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 나눔과 배려 문화 확산 - 관계·회복·자치중심 생활교육 -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방교육 추진	- 단위학교 중심 학교폭력 예방 - 공정하고 교육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 학생보호 안전망 구축 -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운영	- 학생 상담활동 강화 -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 대안교육 지원 강화

2. 학생생활교육 추진 방향

○ 따뜻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위한 관계중심 학생생활교육 강화
○ 단위학교 유형별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한 담임 중심의 생활교육 지원
○ 관계·회복·자치 중심 생활교육 내실화를 통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
○ 학생 안전보호를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
○ 생명존중 교육 내실화 및 유형별 자살 예방교육 실시
○ 학생중심 상담활동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강화
○ 회복중심 생활교육 확산을 위한 교사 연수 확대 및 학생 상담 역량 강화
○ 유관기관과 연계한 범사회적 위기대응 체제 구축

Ⅱ. 중점 추진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	세부사업
1. 소통과 공감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	1-1 따뜻한 관계 교육공동체 형성	1-1-1. 3월, 소통과 공감 따뜻한 교육공동체 세우기
		1-1-2. 학교구성원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
	1-2 나눔과 체험교육 활성화 (봉사, 체험, 청소년 단체)	1-2-1. 학생 봉사활동 운영의 내실화
		1-2-2.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
		1-2-3. 자율 역량을 기르는 청소년단체 활성화
	1-3 관계와 회복 중심 생활교육 강화	1-3-1. 갈등을 조정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1-3-2. 담임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 동아리 지원
		1-3-3. 회복적 생활교육 안착을 위한 연수 지원
		1-3-4. 공정하고 교육적인 생활교육 내실화
		1-3-5.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전문가 운영
	1-4 내실 있는 유형별 예방교육 강화	1-4-1.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
		1-4-2.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강화
		1-4-3. 건강한 학생 문화 구축을 위한 생활교육 강화
		1-4-4. 학생 도박 예방교육 강화
2. 학교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구축	2-1 단위학교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2-1-1.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실시
		2-1-2.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2-1-3.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 내실화
	2-2 공정하고 적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2-2-1. 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개입 및 사안조사
		2-2-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2-3.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보호 및 선도 조치
		2-2-4.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2-2-5. 성관련 사안 대응 체계 강화
		2-2-6. 학생자살(시도)사안 위기개입 역량 강화
		2-2-7.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정책과제	세부과제	세부사업
2. 학교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구축	2-3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2-3-1.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2-3-2. 배움터자원봉사자(배움터 지킴이) 운영
		2-3-3. 사회복무요원(학생보호인력) 운영(초등학교 우선배치)
3.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3-1 소통과 공감 따뜻한 학생 상담활동 강화	3-1-1. 위(Wee)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
		3-1-2.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상담 내실화
		3-1-3. 학급 담임교사의 상담역량 강화 지원
		3-1-4. 또래 상담 활동 강화
	3-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강화	3-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3-2-2. 단위학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강화

◆ 메모

01

소통과 공감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

1-1. 따뜻한 관계 교육공동체 형성

1-2. 나눔과 체험교육 활성화(봉사, 체험, 청소년단체)

1-3. 관계와 회복중심 생활교육 강화

1-4. 내실 있는 유형별 예방교육 강화

1-1 따뜻한 관계 교육공동체 형성

1-1-1 3월, 소통과 공감 따뜻한 교육공동체 세우기

◩ 3월, 따뜻한 교육공동체 세움 주간 운영

❍ 3월 첫 주, 새 학기에 대한 부담과 긴장을 낮추고 학생들의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계 맺기 활동을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 문화 형성하는 주간 또는 기간

- 기간: 3월 첫 주(학교 자율 지정)
- 3월 평화교육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 학교 구성원 간의 소통-공감을 위한 계획을 교육과정에 반영
  - 학교 특색에 맞는 평화 주간 운영(예시)
    - [중점 가치] 중심의 주제통합 수업
    - [학생 생활 적응]을 위한 특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과와 연계한 학교 생활 안내]를 위한 교과별 활동지로 수업하기
    - [기타]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계획 수립
  - 3월 첫 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
- 평화주간 운영을 위한 흐름도

2월 초		2월 초 ~ 중순		3월 초		이후
평화주간 운영을 위한 공동체 협의 (학년 또는 학교)	▶	평화 교육 운영계획 수립 (역할 분담, 모형)	▶	평화교육활동	▶	운영에 대한 성찰

※ 운영 사례 예시안 탑재 → 전라북도교육청/인성건강과/부서자료실 또는 업무마당/학생생활교육

◩ 3월, 우정이 싹트는 교실을 위한 담임중심 생활교육

- 기간: 3월 한 달
- 대상: 초. 중. 고 모든 학급
- 방법: 조·종례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한 생활교육
- 주요 활동 내용(예시)

❍ 함께 세우는 학급 목표	❍ 담임이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 우리반 생활약속 만들기	❍ 폭력 없는 교실만들기 서약식
❍ 학생, 학부모 상담	❍ 다양한 친교 활동

1-1-2 학교구성원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

◩ 기본 방향

- 수업 속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인성역량 함양
- 학생 자치활동을 중심으로 학교 속 민주주의 실천
-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연중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도덕성, 사회성, 감성을 위한 통합적인 교육활동 진행

◩ 세부 운영 계획

- 대상학교: 초·중·고 희망학교 / 학교교육과 공문 시행
- 주요 운영 내용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학생자치를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 함께 만드는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규정 - 교실 수업을 살리는 우리반 생활수업 협약 제정 - 학생 자치회 중심의 학교행사 추진 - 학급 담임 중심의 민주적 학급 운영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정 재구성 - 학교급별 맞춤형 생태, 평화 지향의 수업 운영 - 가정·지역 연계한 인성역량 함양
컨설팅 및 협의체 운영	- 학교급별 다양한 학생 자치를 살리는 교육활동 공유 - 찾아가는 신규학교 컨설팅 지원

1-2 나눔과 체험교육 활성화(봉사, 체험, 청소년단체)

1-2-1 학생 봉사활동 운영의 내실화

◩ 봉사활동 편성·운영의 기본 방향

- 도교육청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따라 단위 학교 자체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운영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편성
- 학생 봉사활동 지도를 위해 학교에 「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학생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인성 함양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실천
- 국가 인정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한 학생 봉사활동 지도 및 관리로 실적 부풀리기 등 비교육적 행태 개선
- 학생 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의 원칙 아래 수행
-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 시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기관 확인

◪ 추진 내용

◐ 학생 봉사활동 시간

학교급	봉사활동 운영 시간	학교 교육과정상의 봉사활동
초등	10시간(권장) 이상	5~7시간(권장)
중등	18시간 이상	10시간(최소 7시간) 이상
고등	20시간 이상	

◐ 개인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1일 8시간 이내 인정

구분	평일 (7교시수업기준)	평일 (6교시수업기준)	평일 (4교시수업기준)	휴업일 (토, 공휴일)
인정시간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 인정 대상 시간**								

◐ 2019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도교육청 지침) 참조

※ 탑재: 전라북도도교육청/학교교육/학생봉사활동/자료실

◪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봉사 활동 계획 수립 ▶ 봉사 활동 참가자 확보 ▶ 봉사자 사전교육 (자세, 방법, 일반지식) ▶ 봉사 장소 배치 ▶ 실무 지식 현장 교육 ▶ 실천 ▶ 반성 및 평가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 차기 계획에 반영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승인)** 한 경우에 한하여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봉사활동 계획 검토 후 **승인**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확인서 **평가&확인**	▶	봉사활동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신청 전에 담당 교사와 사전 확인 필요(인정 가능 기관 여부, 활동 내용 등)**

[학생]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봉사활동 실행 및 확인서 전송 [시스템→나이스]	▶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나눔포털, VMS DOVOL		나눔포털, VMS DOVOL		나이스		나이스

-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실적 연계 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19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 실적 연계 사이트별 실적 공유 안내
• 나눔포털 ⇔ VMS **자료 전송 시 실적 공유**
•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1-2-2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

◩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기본 방향

현장체험학습 범위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기타]
❍ 1일형 현장체험학습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은 관련 법규 및 도교육청의 정책에 부합하게 실시
-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및 안전 취약 지역에서의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금지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의 계획 및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학생의 의견 적극 반영
- 교육과정과 연계된 평가·발표활동의 확대
- 가급적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자제하고, 국내·외 분산 실시 배제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은 실시 후 과정 및 결과 등을 도교육청 정보공개 통합시스템(http://open.jbe.go.kr)에 공개
- 학교별로 음주감지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구입 사용
  - EMC 테스트 통과 및 경찰청 조달납품 제품 권장

◩ 추진 관련 세부 안내

-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준수
- 충분한 사전 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한 체험학습 시행
- 학생 주도적 탐구주제 선정 등 학생활동과제 부여
- 현장체험학습 계약 지침 준수
  - 체험학습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업무로 평가되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예방활동 강화
  - 경쟁 입찰을 통한 제반 업무의 투명성 강조
- 학생 일탈행동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교육 수립 및 실시
  - **반드시** 안전교육(교통, 화재대피 등) 및 학교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청렴교육 실시
  - 학생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 음주, 폭력, 금품갈취, 기초질서 등을 해치는 행위 근절지도
  - 공중도덕 및 문화재 관람 질서 준수
- 인솔교사의 사제동행 및 솔선수범
  - 모든 현장체험학습 교사 임장지도 의무 준수
  - 버스운행 시 인솔교사 탑승하여 학생안전지도 담당 및 교통사고 예방
- 현장체험학습 추진 계획 안내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 구성
  - 학년 단위 대규모 테마식 현장체험학습과 국외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자제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경비 정산 및 공개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공개자료 탑재
- 국외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자제
  - 학년 단위, 전교생 등의 대규모(150명 이상)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지양
  - 국외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사전, 사후 계획 철저
  - 국외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사전 보고체제 구축, 현장답사 실시
  - 현지 대사관(영사관, 여행사 등)등 협력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구 분	내 용
영사콜센터	-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영사콜센터로 전화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제공) - 국내 02-3210-0404, - 해외(유료)+822-3210-0404, 해외(무료) +800-2100-0404 (구체적인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참고
여행경보제도	-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위험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해외여행객에게 단계별 행동요령 안내 서비스 제공 ※ 남색(여행유의) . 황색(여행자제) . 흑색(여행금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또는 해외안전여행 앱 참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국가별 여행경보 제도, 여행자 사전등록제 ‘동행’ 등 국가별 안전공지 사항 서비스

◩ 현장체험학습 운영 내실화

- 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학습 권장
  - 교과 단원을 적용하여 현장체험 기회 부여, 주제별 소규모 단위로 분산 실시
  - 학교 관리자 및 담임교사의 의식 전환, 학급 단위 또는 2~3개 학급단위로 분산 실시
- 학교별 특색 있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 예) 지역의 명산 오르기, 동문과 함께하는 행사, 입학생 사제동행 수련활동 등
- 지역의 전통문화 체험 기회 확대
  - 학교 간 청소년 문화 교류 확대
  - 단체 활동을 통한 각종 문화행사 관람 및 참여 유도
  - 지역별 축제 참가로 문화계승자 역할 수행
- 수행평가, 발표회, 전시회 등을 통한 학습 효과 극대화
- 테마 중심의 일일형 현장체험학습의 적극 권장
  - 여행지 중심 관광 위주의 현장체험학습 지양
  - 계약업체의 프로그램 주도 지양
- 현장체험과 봉사활동 등 동시 추진 권장

◩ 중요 현장체험학습 청렴도 개선 강화

- 현장체험학습 업무담당자 및 관련업체에 대한 청렴준수 이행 강조
- 현장체험학습 비리고발센터(원클릭 신고센터) 운영
  - 계약업체 또는 위탁업체의 선정 및 계약과정에서의 비리 신고
  - 사전준비 과정 및 운영단계에서 업체로부터 각종 편의제공 및 금품수수 등의 비리 신고
  - 신고방법
    - 전화 제보: 도교육청 원스톱민원서비스 063-239-3114
    - 인터넷 제보: 도교육청 홈페이지/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
    - 비리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치 의뢰

◩ 현장체험학습 공개방 운영

- 도교육청 정보공개(http://open.jbe.go.kr) / 현장체험학습
- 공개대상: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 현장체험학습 공개방에 실시 후 <u>14일 이내 공개자료 탑재</u>
- 필수공개 항목
  - 운영계획서, 현장답사 결과, 학부모 동의율 및 심의 결과, 개인정보 삭제된 계약서 사본(계약 완료 시),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 조사 결과(개인정보는 삭제) 포함

◩ 효도·방문 체험학습 운영

-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가능

-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 지도
- 2019학년도 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방문 등) 추진 지침 참조
  ※ 탑재: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정보공개/현장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자료방

1-2-3 자율 역량을 기르는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 목적

- 학교교육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끼를 발산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
-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체험활동,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 청소년 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 근거

-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15208호, 2018.6.13.)
- 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5453호, 2018.9.14.)

◩ 추진계획

- 목표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 기반 마련
  - 체험 중심의 심신수련을 통한 정서 순화와 바른 심성 함양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로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
- 기본 방침
  - 단체별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청소년 단체 활동 활성화**
  -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활동)으로 1학생 1청소년 단체 가입 **권장**
  -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단체 활동 기회 제공
- 청소년 단체 활동 반부패·청렴 대책
  - 청소년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해당 업체의 금품, 향응, 편의(교통, 숙박 등) 제공 및 수수 금지
  - 학부모(회)로부터 무단 금품 징수·기부행위·인솔교원 경비 지원 등 금지
  - 공금 횡령 및 직무 관련 능동적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징계처리
  - 학교회계를 통한 청소년 단체 활동비 징수 및 집행 철저
  ※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참조

◩ 세부 추진 내용

-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과 인성이 겸비된 균형 있는 교육실천을 위한 청소년단체 조직 및 운영 권장

- 청소년단체 활동 내용은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
- 학교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

단위학교 청소년 단체 조직 및 운영

- 1교 1단체 이상 조직, 1학생 1청소년 단체 가입 적극 권장
- **특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스카우트 육성 권장**
-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단체 단원 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모집하되, 학생의 개인적 희망과 학부모의 동의에 따라 가입한 학생으로 조직
- 학생들의 단체 가입 자유 보장: 특정 단체의 가입이나 탈퇴를 강요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지도
- 단위학교 내의 단체 간 경쟁적 단원 확보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 강화
  - 청소년 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의 연수 및 활동을 적극 지원
  -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를 위해 해당교사에 대한 출장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 및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학교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름)
  - 대(단)원은 단복 및 장비 등을 물려받아 활동하는 등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며, 입단 시 기본이 되는 단복 이외의 필수품이 아닌 장비의 구입은 지양

청소년단체 활동 시 안전 준수

- **전라북도 2019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준수**
- 청소년단체 연맹 행사 참가 여부는 학교장이 적의 판단하여 결정하되 희망자(학부모 동의)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각종 안전대책 수립 후 참가
- 수련원 등의 위탁교육 시 지도교원의 임장 지도 철저
- 반드시 행사별 사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학교(성)폭력 예방교육, 생활지도 계획 등을 수립한 후 사제동행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

반드시 **연간 계획 수립 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 이행 (필수)**

◩ 단체 활동 유공 지도교사 표창 계획

구 분	내 용
대상자	- 청소년단체 추천 지도교사 - 청소년단체에 등록하고 2년 이상 활동한 지도교사로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지도교사
지도교사 표창 계획	- 시기: 12월 예정 - 표창 대상(26명, 연맹별 등록학생 수에 따라 차등 배분) - 훈격: 교육감 표창
행정사항	- 2019. 교육감 표창계획 심사 기준에 의거, 각 단체별 특성에 맞게 자체 공적심사 기준에 따라 대상자 추천 (시상 계획 추후 별도 안내)

◩ 행정사항(청소년단체 운영 현황 제출)

- 학교: 청소년단체 가입 현황(2019.4.30.기준) [자료집계시스템]
- 초·중·고·특수학교: 2019. 5. 9.(목) 까지
- 교육지원청: 자료집계 연계등록 및 취합하여 2019. 5. 17.(금)까지 제출
- [서식] 2019년 학교별 청소년단체 등록 현황

지역	학교급	학교명	단체	남	여	계	단체	남	여	계	단체	남	여	계	비고
전주	*초*	*00초등학교*	*1*	*20*	*20*	*40*	*3*	*0*	*30*	*30*	*12*	*15*	*15*	*30*	*청소년연맹*

※ 단체 코드

1. 청소년연맹 2. 스카우트 3. 걸스카우트 4. 대한적십자사(RCY)
5. 우주청소년단 6. 해양소년단 7. 파라미타 8. 4-H 9. 로타리 클럽
10. 야생동식물보호단 11. 청소년세상 12. 기타 (비고란에 단체명 기록)

1-3 관계와 회복중심 생활교육 강화

1-3-1 갈등을 조정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전문가 양성 연수 지원

- 가해학생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패러다임의 한계 노출
-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한 회복적 관점으로의 전환 필요
- 학교 현장의 회복적 생활교육 정착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 지원(연구회 운영)
- 학교 현장의 갈등 상황에 대한 중재, 조정, 해결 등의 전문가 양성
  - 오프라인 연수
    - 연수일시 : 2019년 8월, 2020년 1월 중 40시간씩
    - 연수대상 : 교원 60명(원격연수 이수자 및 회복적 생활교육 동아리 회원)
  - 원격 연수
    - 연수일시 : 2019년 상반기, 하반기
    - 연수대상 : 교사 1,500여명
- 연수내용
  -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 경험 및 실습
  - 회복적 질문과 회복적 상담을 통한 적용
  - 갈등전환, 문제해결을 위한 서클 운영 실습
  - 회복적 대화모임 및 조정자 역량 강화 등
- 역할
  - 갈등 전환을 위한 회복적 조정 전문가 및 강사 요원으로 활동
  -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연구회 추진(월 1회 사례 회의 및 역할 논의)
  -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전문상담사와 연계하여 지역별 갈등 조정(중재) 협의체 구성

1-3-2 담임 중심 회복적 생활교육 동아리 지원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교사 동아리 운영

- 목적: 학교별 동학년 회복적 생활교육을 토대로 학급운영을 시도하는 교사 네트워크를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교사 저변 확대
- 대상: 초·중등 8팀
- 시기: 2019년 4월 ~ 12월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교사 연대 활성화 방안

외부 전문가 (맞춤형 연수 지원)	➡	**학교 실천가 (담임교사)**	⬅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 지원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과 확산을 위한 중재모델(회복적 써클) 중점 운영
- 단계별 교사 연수 추진: 교사 동아리 대상

단계	구분	비고
1단계	기초과정 교사 워크숍	동아리 대상
2단계	심화과정 교사 워크숍(회복적 써클의 이해)	〃
3단계	학교로 찾아가는 회복적 써클 운영 돌아보기	동아리 소속 학교

1-3-3 회복적 생활교육 안착을 위한 연수 지원

◩ 관계·회복·자치 중심 생활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 대상: 전체 학교
- 시기: 연중
- 주요 내용
  - 목적: 관계·회복·자치중심 생활교육을 위한 교원 인식 제고
  - 방침: 각종 교원 연수 시 관계중심 생활교육 내용 편성 및 연수지원
    - 학교관리자 연수(학교교육과정 설명회, 교육지원청, 4월～10월)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학부모 연수(교육지원청, 4월)
    - 학교폭력업무담당자 연수(교육지원청, 연중)
    - 관계·회복 중심 생활교육 연수(원격연수, 1,500명, 3월～12월)

◩ 소통과 공감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부모 교육

- 대상: 학부모
- 운영 방안
  - 학부모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자녀교육에 필요한 역량 강화

-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 가정·학교·지역사회를 묶어내는 공동체 문화 확산
-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에 대한 학부모 역할 인식 및 정서 함양

◩ 단위학교 학부모 생활교육 공감 연수: 전환기 학부모 교육

- 대상: 초1, 중1 학부모(우선), 관심 있는 학부모
- 시기: 학년 초
- 운영 방안
  - 내용: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부모 역할,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 자녀에 대한 이해, 변화된 학교 알기 등
  - 방법: 학교(일반), 지역사회와 연계(직장인을 위한 야간운영)

1-3-4 공정하고 교육적인 생활교육 내실화

◩ 교육적 차원의 학생 생활 교육 및 징계

- **근거(초중등교육법 제18조)**

> ❍ **제18조(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학교 규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 [반드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재 량] 위원장은 교감(교무부장), 부위원장은 인성인권부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 [재 량]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약간 명을 위원으로 별도 위촉할 수 있다.

  - 기능: 학생 생활 교육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단위 학교 학생 생활 교육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
  -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은 결재·보관하며, 의결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한다.
  - 위원회 운영 기본 방침
    -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위원회 개최 전 사전에 알리고, 그 결과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상담을 통하여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 단위 학생징계 절차

<table>
<tr><th>처리 과정</th><th>과정별 주요 처리 내용</th></tr>
<tr><td>학생생활규정
위반 사안발생</td><td>○ 사안의 경중에 따른 교육적 구분
<table><tr><td>경미한 사안</td><td>담임 교사 인계 ▶ 훈계 또는 상담</td></tr><tr><td>중대 사안</td><td>인성인권부로 인계 ▶ 위원회 회부</td></tr></table>○ 생활교육 위반 사실 1차 통보 ▶ 학부모</td></tr>
<tr><td>⬇
사안조사
및
사안 보고서 작성</td><td>○ 관련 학생 조사 및 객관적 증거 확보
※ [학생 사안 진술서 양식 활용] 서식2 / 68쪽
○ 학생 권리 고지
- 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될 수 있음을 안내
- 심의 대상일 경우 보호자에게 미리 알림
○ 학생 사안 조사 시 유의 사항
- 강압적인 조사, 회유, 시인 강요 등 금지
- 여학생 성관련 사안 조사 시 반드시 여교사 참여
-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 공간 가급적 피할 것
- 여러 학생 관련 사항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조사 권장
(사안 조작 예방 및 학생 간 사생활 보호)
- 충분히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한 조사보고서 작성 서식3 / 69쪽</td></tr>
<tr><td>⬇
사안보고 및 학부모
상담</td><td>○ 사안 보고 ▶ 학교장
○ 필요한 경우 학부모 상담을 위한 내교 통지 ▶ 학부모
※ 학부모 상담기록 유지 : 일자 및 시간, 내용 등</td></tr>
<tr><td>⬇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 심의</td><td>○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학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칙 위반 행위의 경위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
○ 관련 학생 자료 보강(지도노력 등 추가자료)</td></tr>
<tr><td>⬇
생활교육위원회
개최에 대한
서면통지</td><td>○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 ▶ 2차 통보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명기
○ 위원장과 학교장에게 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 생활교육위원회 제출용 서류 준비(개요, 비행경위와 학칙위반정도 및 학칙위반 조항, 기타 학생에 대하여 참고할 사항, 문답서, 자술서)</td></tr>
<tr><td>⬇</td><td></td></tr>
</table>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 사안보고(사안보고, 관련법률 및 규정 안내) ○ 진술 기회 부여 및 질의응답(당사자, 참고인) - **학생 또는 학부모 진술기회 반드시 부여** - 가능한 모두에게 진술기회 부여 ○ 관련 교사 의견 진술(생활태도, 본건 관련 의견, 상담교사의 의견 등) ○ 징계 심의(양정기준 제시, 동일 사안 심의결과 고지,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의 자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심의 사항 확인(조치결과, 시행방법 및 일정 등) ○ 폐회 ※ **병과조치 불가**
⬇	
학교장 결재 및 조치결과 통보	○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장 결재(회의록 포함) **서식4 / 70쪽** ※ 학교장은 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재심을 명할 수 있음 ○ **학부모에게 조치결과는 반드시 서면 통지(등기 우편)** (징계기간 중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지도내용, 학생 유의사항, 학부모 유의사항 및 학부모 협조사항 등을 포함) ※ [위원회 결정 통보서 양식 활용] **서식5 / 71~72쪽** ※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청구 가능함을 안내 ※ 퇴학 처분의 경우 반드시 재심 청구 안내 ※ 징계 결과 공고문 게시 지양(인권침해 소지 있음) ○ **학생 징계의 목적** - 징계 의결 과정에서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 접근 및 공정성 확보 - 학생 징계 의결이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가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학생 지도 방법이 징벌적 차원이 아닌 교육적 차원이어야 함 ○ **학생 징계 양정 결정 시 유의사항** - '전학' 징계는 할 수 없음 - '퇴학처분' 징계 시 사전에 <u>1주~2주 정도</u>의 가정학습 기간을 두어 학생 퇴학 후 진로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능 -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이내로 제한하며, 등교 정지를 의미하지 않음(학교를 오도록 하고 자율학습 등의 교육적 방안 강구) - **반드시 1개의 징계만 할 수 있음**
⬇	
조치시행 및 추수지도	○ 징계 조치 시행(징계 대장 기록 포함)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노력 강구(상담 등) ○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

◩ 징계에 따른 학교 단위 이의 제기 및 심의 절차

단계	내 용
재심의 가능한 경우	○ 생활규정에 따른 학생 징계: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함 ○ [학교장 재심의 요구] 학교장이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이의 제기]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재심의 가능 ○ [교육적 판단]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교육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재심의를 요구하여 기간 단축 등 징계 경감 가능(학생생활규정에 근거 마련 필요) ○ 재심의 관련 단위학교 역할 - 이의 신청서 서식 제공 **서식6 / 73쪽** - 소위원회 구성 및 재심의 신청 기간(예_3일 이내) 등 마련 ○ 학생 및 보호자: 신청서에 이의 제기 사유를 분명히 기재하여 제출
단위학교 재심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만 재심의 함으로써 학생중심으로 접근하되 업무 효율성 제고)** ○ 소위원회: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예) 교무회의 또는 교감, 해당학년부장, 인성인권부장 3인 구성 등
재심의 결정	○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심의	○ 심의를 통해 재심의 사유 있음으로 결정되면 위원회 개최 후 재심의 ○ 학교 차원의 재심의 고려 사항 - 재심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학생•보호자 입장 최대한 고려 - 재심의 결과는 원처분과 같거나 낮은 처분이 내려져야 함 -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및 인격 존중 -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징계로 개전의 기회 부여 - 재심의 결정 시 조치(징계) 집행 유보
조치 시행	○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통보 → 조치 시행

◩ 전북학생징계조정위원회

- 대상: 국.공.사립학교 학생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 기관: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전북학생징계조정위원회
  -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서면(①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② 피청구인 ③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④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재) 징계조정위원회에 제출
  - 재심 신청 시 조치(징계) 집행 유보
- 제출 안내

❍ [청구인] 제출 자료

- [필수] 재심청구서 서식14-6 / 91쪽, 위원회 결정 통보서
- [권장] 청구사유서, 학생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계획서 등

❍ [학 교] 제출 자료

- [필수] 위원회 회의록, 사안 조사서, 담임 또는 학생부장 의견서

❍ 제출 관련 기타 안내

- 우편: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전북학생징계조정위원회
- 팩스: 063-220-9411 / - 문의: 063-239-3743

◩ 학생선도(징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차이

구 분	학생선도(징계) 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근 거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위원회 구 성	○ [재량] 규정으로 정함	○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 - **[반드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구성
조 치 (징계)	○ **1호~5호까지 징계(1개만 조치)** - 1호: 학교내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특별교육이수 - 4호: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5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 ※ '전학'조치는 할 수 없음	○ **1호~9호까지 조치(병과 조치 가능)**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초·중학생 제외)
출 석 정 지 기 간	○ **출석정지 : 기간, 횟수 제한됨** - 1회 10일, 연간 30일 이내 [~부터 ~까지(○일간)]	○ **출석정지: 기간 제한 없음** ※ 단, 명확한 기간을 명시해야 함 [~부터 ~까지(○일간)]
주 의 사 항 (공통)	- 출석정지: '등교정지'가 아니므로 학교 내에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 단, 보호자 요청 시 보호 가능 확인 후 가정학습(과제 부여 등 학습 조치) 처리 가능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에 나와도 무단결석 처리) - 조치(징계)로 인한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간 불인정 - 학교 내의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 (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1-3-5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전문가 운영

◩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전문가 구성 및 운영

- 목적: 학교폭력 화해 도모 및 근본적 해결을 통해 재발 방지 및 교육력 회복 제고
- 대상: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4월 중)
- 위촉기간: 2019년 4월 ~ 2020년 2월(11개월)

◎ 운영기간: 2019년 4월부터 운영(담당자 연수 및 공문을 통해 안내 예정)
◎ 역할
- 학교폭력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관계회복 중심 분쟁조정 지원
- 법적소송 및 분쟁의 최소화를 위한 합의 중심 분쟁조정 지원
- 자발적 문제해결방안 탐색을 위한 갈등해결모임 운영 및 사후관리
- 분쟁(갈등)발생 시 확대 예방을 위한 교사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신청 절차 및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4월 중)

1-4 내실 있는 유형별 예방교육 강화

1-4-1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 담당: 건강보건팀

◩ 추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 [학교, 교육청] 자발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활동 전개

◎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 구역에서의 금연 강화
- 흡연 학생 및 교직원, 외부 방문객 교육 강화(※ 학교 건물뿐만 아니라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구역 전체가 금연구역임)
- 교내 규정(학칙) 제정: 학생, 학부모, 교사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흡연관련 교내 규정을 마련(※ 자발적 참여 유도)

○ 교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
○ 학생의 흡연과 관련한 학칙을 학생생활규정안에 포함하여 제정,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
○ 교내 흡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 규정 및 적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성인 10만원, 미성년자 5만원)에 대한 부과 원칙 안내

◎ 세계금연의 날(5월 31일) 캠페인을 통한 금연의식 함양 제고(학교 자율적 실시)

◩ 학교 중심 흡연예방교육 활성화

◎ **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학교 운영**
- 흡연 실태조사, 학생, 학부모 요구도 조사를 통한 계획 수립 및 실시
-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흡연예방교육 년 1회 이상 실시
- 학교 내 협력체계
  • 조직.운영 및 사업환경 조성(교직원 금연 활동)

- 교감, 인성인권부장, 담당교사, 학생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운영 (주요 프로그램 기획 시 학생회 및 학부모 의견 반영)

-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에 의한 학급별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하되, 특히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적 실시
- 흡연예방 인식 및 태도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 흡연학생의 금연지원을 위해 학교자체 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금연교실 운영
  -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학생금연지원센터 및 보건복지부 지정 원광대병원 전북금연지원센터 운영

담임교사 중심의 흡연예방.금연교육 강화

- 학교 실정에 맞는 흡연예방 교육주간 운영(연 1회)
  - 5분 흡연예방 교육주간 운영
  - 토의.토론수업으로 만나는 흡연예방 교육주간 운영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 구역에서의 금연 강화

- 흡연 학생 및 교직원 교육 강화

◩ [교육청] 취약지역 흡연예방·금연교육 내실화 지원

찾아가는 흡연예방.금연교육(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120교

- 대상학년: 초 3, 4학년, 중 1, 2학년
- 대상학교: 농어촌 지역 및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 보건교사 미배치교 중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한 지역 학교로 대상 학년 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학교
  - 대상학년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거점 학교 지정 통합 운영 가능(단,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학교 흡연예방사업 지원단 운영(지역특화)

-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원단(동아리) 구성.운영
- 조직: 지역별 총 1~6개 팀, 총 32개 팀(팀원: 지역별 담당교사)
- 지원 내용: 사업지원단 자체운영비 지원(1,300천원/팀)

◩ [교육청] 교원 흡연예방·금연교육 역량강화 연수 내실화

지역별 학교 흡연예방.금연교육 특화연수 실시(지역특화사업으로 운영)

- 학교장 및 인성인권부장 집합연수, 2시간 특강, 우수사례 공유

심화형 학교 담당자 집중 연수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 직무연수: 40명, 15시간(1박 2일)

학교흡연예방사업 선진사례 국외연수: 2명(예정)

1-4-2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강화 담당: 건강보건팀

◩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강화

- 학교 교육과정 연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연간 4시간 이상 실시
- 학부모 자살예방교육 연 2시간 이상 실시
- 학교장 및 교감 대상 연수 실시
- 전북교육연수원 연계 온라인 연수 실시

◩ 자살징후 조기발견 강화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초1·4학년, 중1, 고1)

◩ 관심군 학생 전문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생 정신건강 증진 전문가 협의체 운영
  - 위(Wee)센터, 광역 및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도청
- 위기학생 One-Stop 지원기관 지정·운영
- 지역별 진료지원 지정병원 구축·운영(23개 병·의원 MOU체결)
- 학교방문 심층평가 및 치료중재 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층 관심군 학생 진료비 지원

◩ 생명존중 문화 조성

-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상담)주간 운영
- 자살예방의 날(9월10일) 관련 민관 합동 캠페인 추진

1-4-3 건강한 학생 문화 구축을 위한 생활교육 강화 담당: 건강보건팀

◩ 학교 주변 관련 생활교육 강화

- 초등학교 주변 불법간행물 관련 중점 생활지도
- 학교 주변 상점에 학생 외상 근절
  -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유해매체 노출 예방

◩ 학생 검열식 교문지도가 아닌 맞이하는 문화로 전환

- 등하교 시 검열식 교문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학생과의 따뜻한 관계를 위한 맞이하는 학교 문화로 전환

1-4-4 학생 도박 예방교육 강화 담당: 학생생활교육팀

◩ 추진 근거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4472호

◩ 전라북도 현황(2018.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 전북 학교내 청소년 유병률
- 문제군(2.4%) 표집지역 5순위, 위험군(8.2%) 표집지역 2순위
- 위험집단(문제군+위험군) (10.6%) 표집지역 3순위
- 전북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이 도박문제 **위험** 상태

◩ 전문기관 협력 체계 구축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활용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

❍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예방 교육 신청 및 문의**

온라인 신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http://www.kcgp.or.kr)→예방홍보→예방교육→교육신청
예방 교육 문의: 전북센터(☎063-255-1336)

❍ **온라인 예방 교육 자료 안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http://www.kcgp.or.kr)→예방홍보→예방콘텐츠→온라인예방교육콘텐츠

❍ **도박 문제 상담**

온라인 상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http://www.kcgp.or.kr)→헬프라인→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36** (24시간 365일 상담 가능)

◍ 도박 사안 처리 및 조기 개입

1. 도박 예방 교육(평상 시)	2. 도박 문제 발생	3. 위기 개입 요청
▸ 학생 도박 문제 예방활동 및 예방 교육 실시 ▸ 도박문제 선별검사 실시	▸ 학생 도박 문제 인식 및 식별 ▸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선별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기 개입 요청 (국번없이 ☏ 1336) ▸ 교육청 사안 보고

4. 위기 개입	5. 종결 및 재발방지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집중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상담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 도박 문제(중독) 학생 지속 관리 ▸ 재발방지를 위한 추수 지도 실시 위(Wee)센터, 위(Wee)클래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학교, 교육지원청] 도박예방 교육 강화

◍ [학교]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

- 학생·교직원
  -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 권장
  - 내용: 게임 속 사행성 요소, 도박문제와 예방법 등
  - 기존 학교 안전교육(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등과 연계하는 등 기존 교육 활용 가능

- 도박전문기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강사 신청

- 학부모
  -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도박 예방교육 자료 발송(4,10월)
  - 학부모총회를 활용하여 자녀 도박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올바른 인지·대처방법 교육

[교육지원청] 학교관리자 및 상담(교)사 연수

-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위(Wee)센터 및 학교 전문상담(교)사
-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
-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게이트키퍼교육(3시간) 실시
- 학교관리자 연수: 학교폭력관련 연수와 병행 실시 가능

02

학교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구축

2-1. 단위학교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2-2. 공정하고 적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2-3.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2-1 단위학교 중심 학교폭력 예방 활동 전개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기본 방향

❍ 관계·회복·자치 중심의 생활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
❍ 담임·현장·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 경쟁중심 학교문화 개선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 교육력 회복 중심의 사안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

2-1-1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실시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학생)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전체 학교 777교)
- 횟수: **반드시** 연 3회(학기당 1회)이상, 총 4시간 이상
-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대처방안 등
- 방침: 학급단위 실시,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교직원 및 학부모)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전체 학교 777교)
- 시기: **반드시** 연 3회(학기별 1회)이상
-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계·회복중심의 생활교육 안내
- 방침: 교육과정설명회, 공개수업, 학교방문의 날 등 활용

◩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

- 대상: 모든 학교, 14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시기: 3월, 수시
- 내용
  -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학생, 교직원, 학부모)
  -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계획 게시
  - **반드시** 학교폭력예방계획 수립(학교, 교육지원청)
- 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림

2-1-2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운영

◩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 대상: 초·중·고 중 희망학교 415교(전체 학교 777교 중 53.4%), 선정완료
- 시기: 연중

◎ 주요내용
- 학교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맞춤형 예방활동 프로그램 운영
- 목적: 생활지도 여건 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 방침: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지원내용: 학교 당 150만원 ~ 550만원, 총 940백만원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수업경감 대체강사 지원
- 예시: 또래활동, 친구사랑동아리, 사제동행, 역할극, UCC제작 등

◩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 시기: 연중
◎ 주요내용
-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핵심역량 향상 프로그램임
  ※ 공감, 갈등해결, 감정조절,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 (방침)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활용방법)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http://stopbullying.kedi.re.kr) 활용
- 자료는 수업지도안과 활동지로 이루어져 있음

2-1-3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 내실화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운영
- 대상: 5교 선정 운영, 어깨동무학교 자율 선택과제 운영, 선정완료
- 내용: 교과 연계 사이버폭력 예방 교수학습자료 개발·적용
◎ 사이버폭력 예방 거점 위(Wee)센터 운영(전주 덕진, 완산)
- 사이버폭력 전문강사단 구축
- 찾아가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위학교 지원)
◎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
- 지방경찰청, 도청, 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인테넷드림마을, 상담복지센터 등
- 정보 공유·협조, 프로그램 지원시스템 구축
◎ 사이버폭력 예방 관련 자료 탑재 활용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http://www.아인세.kr), http://www.dorandoran.go.kr
◎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홍보 강화

◩ 언어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 언어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른 언어 사용 교육

-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임을 명확하게 인식토록 교육
- 욕설 금지에서 차별·편견·비난 언어 금지 등 바람직한 의사 소통·비폭력 대화 교육으로 확대

초		중		고
바른 언어습관 형성 교육	▶	긍정적 상호존중 언어 사용 교육	▶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신장 교육

-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운영
  - 대상: 20교 선정 운영, 어깨동무학교 자율 선택과제 운영, 선정완료
  - 내용: 학교 구성원 대상 언어문화 개선 활동, 교사연구회 활동 등
- 언어폭력 관련 생활교육(바른말 고운말 사용하기)
-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 밥상머리 교육,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행사 등
  - 언어순화를 위한 다양한 교내 행사 추진

◩ 성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3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관련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공감 및 토론, 상황극 등 체험중심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 장난과 폭력의 차이 등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올바른 성가치관 교육
- 캠페인, 홍보를 통한 성폭력 예방 문화 교육

2-2 공정하고 적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2-2-1 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개입 및 사안조사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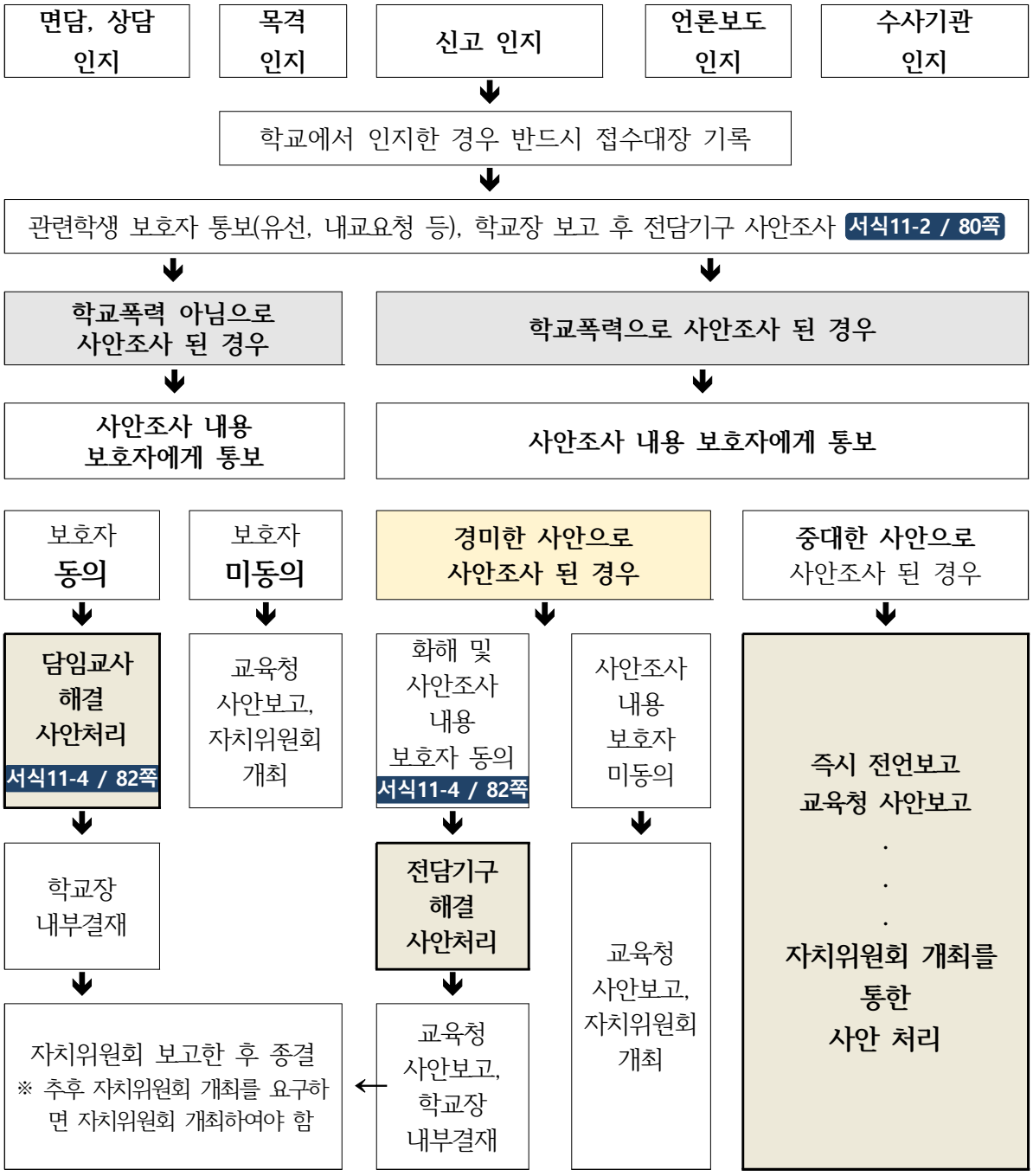

◪ 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개입

사안인지	▶	학교장 보고	▶	보호자 통보	▶	사안조사	▶	최초사안보고
신고대장 접수 서식7-1 / 74쪽		필요시 즉시 분리 및 선 조치 서식8 / 76쪽		유선, 내교요청		학교폭력 전담기구 서식7-2 / 75쪽		교육청 서식9 / 77쪽

- 학교장 선 **조치: 피·가해학생 구분이 명확한 사안인 경우에만 가능**
  -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련학생으로 지칭하고 학교장 재량 조치 실시
- **사안조사: 관련학생 면담(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교육청 서면보고: 48시간 이내 사안보고(공휴일은 제외)
  - 최초보고(초기 사안조사 후), 종결보고(자치위원회 개최 후)
  - 최초 보고된 사안: 담임해결 및 학교폭력 아님 등으로 처리 된 경우도 반드시 종결 보고
  - 보고 절차(FAX): 각급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순	교육지원청명	FAX 번호	순	교육지원청명	FAX 번호
1	전라북도교육청	220-9411	9	완주	270-7639
	학생인권교육센터	237-0120			
2	전주(초)	추후안내	10	진안	432-6337
3	전주(중,고)	추후안내	11	무주	322-4649
4	군산	0303-0944-2769	12	장수	351-2718
5	익산	837-1682	13	임실	642-2723
6	정읍	533-5929	14	순창	653-1460
7	남원	631-4701	15	고창	561-5835
8	김제	540-2599	16	부안	581-1318

◪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전담기구 구성권자: 학교의 장
> ○ 구성원: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 ○ 기능: 사안조사(면담, 설문조사 등), 자치위원회 사안보고, 협의록 작성 등

- 사실 확인: 피·가해·목격학생 대상 면담 실시 및 확인서 확보 서식10 / 78쪽
  - 설문조사 실시, 증거자료 수집(이메일, 채팅, 문자메시지 등), 진단서 및 소견서 등
- 정보 수집: 피·가해학생 교우관계, 학교생활, 사안경험 유무, 상담내역, 특이사항 등
  - 경찰에서 사안을 인지한 경우: 14일 이내 가해자 신상정보 및 사건개요를 학교에 제공 (가해학생 정보 및 제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문 시행)
  - 보완수사 등으로 14일 이내 통보가 어려운 경우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통보
- 요구사항 확인: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해결과 관련한 요구사항 파악
- 협의록 및 보고서 작성하여 서식11, 11-2 / 79~80쪽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

◪ 사안처리 담당기구 및 보고부서

◎ 학교폭력 사안 처리 담당 부서 및 기구

가해 / 피해	학생	교원	교직원(교육공무직)	일반인
학생	피: 학교(자치위원회) 가: 학교(자치위원회)	피: 학교(자치위원회) 가: 교원인사과	피: 학교(자치위원회) 가: 총무과(행정과)	피: 학교(자치위원회) 가: 수사기관
교원	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가: 학교(선도위원회)	피: 교원인사과 가: 교원인사과	피: 교원인사과 가: 총무과	피: 교원인사과 가: 수사기관
교직원 (교육공무직)	피: 총무과(행정과) 가: 학교(선도위원회)	피: 총무과(행정과) 가: 교원인사과	피: 총무과(행정과) 가: 총무과(행정과)	피: 총무과(행정과) 가: 수사기관
일반인	피: 수사기관 가: 학교(선도위원회)	피: 수사기관 가: 교원인사과	피: 수사기관 가: 총무과(행정과)	

◎ 학교 내 성 관련 사안 처리 담당 위원회

가해 / 피해	학생	교원	교직원(교육공무직)	일반인
학생	피: 학폭대책자치위원회 가: 학폭대책자치위원회	피: 학폭대책자치위원회 가: 성고충심의위원회	피: 학폭대책자치위원회 가: 성고충심의위원회	피: 학폭대책자치위원회 가: 수사기관
교원	피: 교권보호위원회 가: 선도위원회	피: 교권보호위원회 가: 성고충심의위원회	피: 교권보호위원회 가: 성고충심의위원회	피: 교권보호위원회 가: 수사기관
교직원 (교육공무직)	피: 성고충심의위원회 가: 선도위원회	피: 성고충심의위원회 가: 성고충심의위원회	피: 성고충심의위원회 가: 성고충심의위원회	피: 성고충심의위원회 가: 수사기관
일반인	피: 수사기관 가: 선도위원회	피: 수사기관 가: 교원인사과	피: 수사기관 가: 총무과(행정과)	

◎ 사안 발생 시 보고 절차

일반적인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위학교	☞	관할교육지원청	☞	인성건강과
교사에 의한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위학교	☞	관할교육지원청	☞	인성건강과, 학생인권교육센터
교권침해 사안 (교권보호위원회)		단위학교	☞	관할교육지원청	☞	교원인사과
학생인권 침해 사안		단위학교	☞	관할교육지원청	☞	학생인권교육센터
성 사안	피해학생-가해학생	단위학교	☞	관할교육지원청	☞	인성건강과
	피해학생-가해교사	단위학교	☞	관할교육지원청	☞	인성건강과 학생인권교육센터
	가해학생-피해교사	단위학교	☞	관할교육지원청	☞	인성건강과 교원인사과

2-2-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호선)**
  - **자격: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위촉**
    - 교감,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 **학부모 전체회의(교육과정설명회 등)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전체위원의 과반수 위촉)**

전체위원수	10명	9명	8명	7명	6명
학부모위원수	6명	5명	5명	4명	4명

    - 해당학교를 관할하는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가(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학과 졸업자 등)
- 본교(분교), 통합학교(초중고) 자치위원회 구성: 학교 여건에 따라 구성
  - **학교별, 학교급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통합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도 무방)**
- 임기: 2년(**연임가능**_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잔여임기로 함)

> ❍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도 위원 구성은 동일(5~10인, 학부모 위원 과반수)**
> ❍ 자치위원회 간사와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 전체위원의 15%는 전문가 위원(청소년전문가, 법률가, 의사, 변호사, 경찰관 등)으로 위촉(권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학교폭력 사안이 없는 경우에도 분기별 1회 반드시 개최(연 4회 이상 개최)
- 신고접수 등 사건인지 후, 14일 이내(7일 이내 연장 가능) 자치위원회 개최
- 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최소 3일 전, 자치위원회 개최일 통보(등기, 공문)
  - 학교전담경찰관에게는 반드시 공문으로 참석요청 통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비공개 회의)
- 수당과 여비: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 지급 가능(소관 업무 공무원 제외)
- 회의록: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복사, 열람 등)
  - 공개범위: 사안에 대한 피·가해 내용 및 심의·의결 사항 등
  - 자치위원회 회의록 검토 위원 2명을 선정하여 회의록 서명 날인

> ❍ 학교폭력 관련 사안진술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당사자 본인이 쓴 진술서는 공개 가능)

◩ 학교폭력대책 공동 자치위원회 운영

- 대상: 관련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위원: 관련학교 사전 협의를 통해 5~10인으로 구성(전체위원 중 학부모 위원 과반수)
- 장소: 협의하여 결정(피해학생 측 학교 권장)
- 보고: 공동 자치위원회 구성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청 보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순서

단계	처리내용	비고
개회 알림 및 심의사안 보고	❍ 개회알림, 성원확인 ❍ 관련학생 측 입장 ❍ 주의사항 전달 ❍ 참석자 소개 ❍ 위원 제척, 기피, 회피 심의 -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참석 당일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위원장은 정회 후 위원회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 결정 ❍ 사안보고 - 사안개요, 진행사항, 중점사항, 관련학생 선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보고	**위원장 또는 간사**
⬇		
관련학생(피해)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사실 확인, 피해(추정)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 진술 기회 부여 ❍ 사전에 피해(추정) 측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사전에 의견제출 관련 안내를 해야 함(서면의견 등) ❍ 결정에 대한 피해학생 측 재심 안내	**피해(추정) 측 입장**
⬇		
관련학생(가해)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사실 확인, 가해(추정)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 진술 기회 부여 ❍ 사전에 가해(추정) 측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사전에 의견제출 관련 안내를 해야 함(서면의견 등) ❍ 결정에 대한 가해학생 측 불복절차 안내	**가해(추정) 측 입장**
⬇		
참고인 진술 및 학교폭력 사안 여부 협의	❍ 참고인 진술(담임, 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 학교폭력인지 아닌 지 여부 협의 -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 아님 결정으로 마무리 - 학교폭력인 경우: 피·가해학생 조치를 위해 심의 진행	**참고인 및 위원**
⬇		
피,가해학생 조치 심의, 결정 및 학교장에게 요청	❍ 관련학생 선 조치 보고 및 추인 협의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 및 결정 ❍ 가해학생 선도조치 심의 및 결정 -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고시안에 따라 조치 결정 ❍ 회의록 검토위원 선출(2명) ❍ 결정된 조치 학교장에게 요청 ❍ 담임교사, 전담기구 해결 사안이 있는 경우 자치위원회에 보고	**위원**
⬇		
결정통보 및 교육청 보고	❍ 학교의 장이 서면으로 피·가해학생 측에게 통보(우편, 등기 등) - 조치에 따른 정확한 불복절차 기재 ❍ 교육청 최종보고	**학교장**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안(교육부 고시 제2016-99호)

<table>
<tr><th colspan="4" rowspan="2"></th><th colspan="5">기본 판단 요소</th></tr>
<tr><th>심각성</th><th>지속성</th><th>고의성</th><th>반성정도</th><th>화해정도</th></tr>
<tr><td colspan="3" rowspan="5">판정 점수</td><td>4점</td><td>매우 높음</td><td>매우 높음</td><td>매우 높음</td><td>없음</td><td>없음</td></tr>
<tr><td>3점</td><td>높음</td><td>높음</td><td>높음</td><td>낮음</td><td>낮음</td></tr>
<tr><td>2점</td><td>보통</td><td>보통</td><td>보통</td><td>보통</td><td>보통</td></tr>
<tr><td>1점</td><td>낮음</td><td>낮음</td><td>낮음</td><td>높음</td><td>높음</td></tr>
<tr><td>0점</td><td>없음</td><td>없음</td><td>없음</td><td>매우 높음</td><td>매우 높음</td></tr>
<tr><td rowspan="9">가해학생에 대한 조치</td><td rowspan="3">교내 선도</td><td colspan="2">1호</td><td>서면사과</td><td colspan="5">1～3점</td></tr>
<tr><td colspan="2">2호</td><td>접촉금지</td><td colspan="5">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td></tr>
<tr><td colspan="2">3호</td><td>교내봉사</td><td colspan="5">4～6점</td></tr>
<tr><td rowspan="2">외부 기관 연계 선도</td><td colspan="2">4호</td><td>사회봉사</td><td colspan="5">7～9점</td></tr>
<tr><td colspan="2">5호</td><td>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td><td colspan="5">가해학생 선도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td></tr>
<tr><td rowspan="4">교육환경변화</td><td rowspan="2">교내</td><td>6호</td><td>출석정지</td><td colspan="5">10～12점</td></tr>
<tr><td>7호</td><td>학급교체</td><td colspan="5">13～15점</td></tr>
<tr><td rowspan="2">교외</td><td>8호</td><td>전학</td><td colspan="5">16～20점</td></tr>
<tr><td>9호</td><td>퇴학처분</td><td colspan="5">16～20점</td></tr>
<tr><td colspan="2">부가적 판단요소</td><td colspan="8">※ 선도가능성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경감할 수 있음
※ 장애학생 여부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td></tr>
</table>

- 자치위원회는 반드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안에 따라 선도 조치 결정
- 기본 판단 요소별로 협의하여(다수결 등) 판정 점수 결정
  - **요소 항목별로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없음 ~ 매우높음 결정(합계 점수에 따른 평균점 산출 금지)**
- 2호, 5호 조치는 판정 점수에 따른 조치가 아니며 필요성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2호, 가해학생 선도의 필요성에 따라 5호 개별조치 가능**
- 가해학생 선도가능성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 장애학생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인정한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함)

2-2-3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보호 및 선도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우선 보호조치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적용기준: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피해학생이 긴급 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피·가해학생의 구분이 명확한 사안만 가능)
- 선 조치: 1호(심리상담 및 조언), 2호(일시보호), 6호(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경찰 동행 보호 및 가해학생 감독 요청(신변보호 등)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학교폭력법에 따른 선 조치 불가
-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즉시 분리 및 상담 등의 교육적 조치 가능

피해학생 지원 강화

- **피해학생 심리상담 즉시 지원: 위(Wee)클래스, 센터, 외부기관 연계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학교의 위(Wee)클래스 또는 상담실에서 실시
사안이 **중대**한 경우	위(Wee)센터, CYS-Net, **전북해바라기센터** 등 외부기관 연계

- 피해기간 출석일수 산입, 성적 평가 등의 불이익 금지, 교육상 필요한 보호 조치 마련
-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원활한 진술 기회 부여, 의견 청취 등
- 신변보호 요청: KT 텔레캅 요청(Tel: 1588-0112, Fax: 02-3281-0432)

외부기관 연계

- 대상: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
- 비용: 무료

기관명	위치 및 홈페이지	문의처	프로그램
마음치유 센터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6 www.maumhl.kr	063 271-0117	- 개인(집단)상담 - 예술치료, 캡프 등
해맑음센터 (기숙)	대전시 유성구 대금로 77 www.uri-i.kr	070 7119-4119	- 개인(집단)상담,심리상담(검사) - 체험, 진로탐색, 캠프, 교육 등
한국피해자 가족협의회			- 위로상담, 모임, 힐링캠프 - 대학생 멘토링 운영 등
대한법률 구조공단	www.klac.or.kr	국번없이 132	- 법률상담 및 구조 -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대한변호사 협회	www.koreabar.or.kr	02 3476-4000	- 무료법률 상담 안내 등

피해학생 치료비 우선 지원시스템 안내

- 지원대상: 학교폭력 피해학생
- 지원범위: 학교폭력 피해로 발생한 신체 상해비, 심리치료비 등

구분	지원범위	인정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의료기관(병원)의 심리치료 비용 및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비용	2년 (1년 이내 연장 가능)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의 치료 비용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30일

- 지원절차: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학생 측에게 선 지원 후, 가해학생 측에게 구상
- **신청방법: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로그인 후 청구**
- 문의처: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063-239-3644~5)
- **제출서류**

○ 학교폭력 피해 청구서, 신체 상해, 상담 및 심리치료비 영수증(원본)
○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확인서(결정통보서, 자치위원회 미 개최 동의서 등)
○ 주민등록등본(원본) 및 통장 사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 현황

- 목적: 정신과 병원에서 받아야하는 심리치료의 부담을 없애고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심리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지원범위: 개인상담 회기당 5만원 이내, 심리검사 20만원 이내

순	지역명	기 관 명	주소	전화번호
1	전주	마음상담코칭센터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8-1	063-228-5936
2	전주	마음편한상담심리연구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54-3	063-224-8338
3	전주	물구나무심리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063-272-2366
4	전주	싹심리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90	063-225-1400
5	전주	아이들케어상담치료센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063-284-7300
6	전주	조우심리상담센터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063-232-8425
7	전주	하람심리상담센터	전주시 덕진구 안골 3길 8-4	063-247-5543
8	군산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군산시 월명로 215	063-466-6454
9	익산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익산시 동서로 116	063-854-3004
10	익산	호남뮤직테라피연구소	익산시 영등동 신일아파트 105동 102호	010-7343-9775

◩ 가해학생 선도조치 및 특별교육기관 운영

◍ 가해학생 선 조치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적용기준: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 피·가해학생의 구분이 명확한 사안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조치

◍ 선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자치위원회 추인)
- 선 조치를 고려하여 가해학생 조치 최종 결정

◍ 가해학생 선도 조치별 유의사항

❍ **2호(접촉금지)**
- 시간적 범위: 그 기간을 반드시 정하여야 함
- 접촉의 범위: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에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은 제외

❍ **3호(교내봉사)**
- 수업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화단·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도우미 등)

❍ **4호(사회봉사)**
-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봉사**(1365 나눔포털, VMS, DOVOL에 등록된 봉사기관 활용)**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조치
- 학생이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으면 보호자 특별교육 발생, 심리치료 조치를 받으면 미 발생
  - 심리치료: 교육의 관점이 아닌 우울증, 정서장애 등의 경향성을 보이는 가해학생에게 정신과 진료를 내리는 조치이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학부모 특별교육 미 발생을 위한 심리치료 조치 절대 금지)

❍ **6호(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교에 나오도록 해야 함(자율학습, 위탁교육, 가정학습 등_무단결석 처리)**
- 출석정지 조치를 할 경우 구체적 기간 명시(예: 2019. 3. 2. ~ 2019. 3. 12.)
  - 시험기간, 학교행사(체험학습)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조치

❍ **8호(전학)**
-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2019년 전편입학 업무 시행계획 참고)
- 동일지역(계열)의 배정원칙에 따라 관할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정원 외 3%)
- 전학 조치된 학생은 전적교로 다시 전학할 수 없음**(고등학생_1년 이내 전적교 소속 지역 전학 불가)**
-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각각 다른 학교 배정
-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주소지 이전 등의 자발적 전학 불가**

❍ **9호(퇴학)**
- 퇴학 조치를 할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함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함
- 교육감은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전학 및 자퇴 등 불가**

◎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기관 운영

- 목적: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식시키고 보호자의 특별교육을 통해 자녀를 탐색하고 신뢰감을 형성하여 교육력 회복 및 재발 방지
- 방침: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이수 5호 조치를 받거나 2~4호, 6~8호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이수를 추가로 받은 경우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발생
  - 보호자 특별교육 미 이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 가해학생이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 보호자 특별교육 미 발생
- 특별교육이수 시간(추가되는 특별교육에 한함_5호 조치는 기간제한 없음)

가해학생 선도 조치	특별교육 발생 여부		특별교육이수 시간(권장)
	학생	보호자	
1호(서면사과), 9호(퇴학)	×	×	-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	○	**4시간 이내**
5호(특별교육이수)	×	○	**5~8시간 이내**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	○	

◩ 특별교육기관 지정 현황

◎ **단기: 10일 이내**

위(Wee)센터, 위(Wee)클래스(상담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전주	253-9214(덕진)/253-9523(완산)	273-1411(전북) /236-1388(전주)
군산	450-2680	468-2870
익산	850-8990(제1) / 852-4501(제2)	856-2008
정읍	530-3080	531-3000
남원	635-8530	633-1977
김제	540-2551	544-1377
완주	270-7687	291-7373
진안	430-6294	433-2377
무주	780-7002	324-6688
장수	350-5228	351-2000
임실	640-3571	644-2000
순창	650-6322	653-4646
고창	560-1613	563-6793
부안	580-7483	581-5839
전문기관	**청소년꿈키움센터(063-277-9890)**	**전주YWCA(063-224-5501)**

◎ 대안교육 위탁시설(장기: **월 단위)**

- 꿈누리교실: 063-253-2279	- 가온누리희망틔움: 070-8738-1318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063-211-8030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063-838-1700
- 민들레학교: 063-283-1356	- 희망샘학교: 070-7119-4119
- 명주골학교: 063-247-8311	- 다음세대학교: 063-452-6326
- 움터: 010-5333-0513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063-323-2285
- 가정형 위(Wee)센터: 063-286-9801	- 어울림 힐링학교: 063-237-1134
- 해맑음센터: 070-7119-4119	- 국립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2-2-4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재심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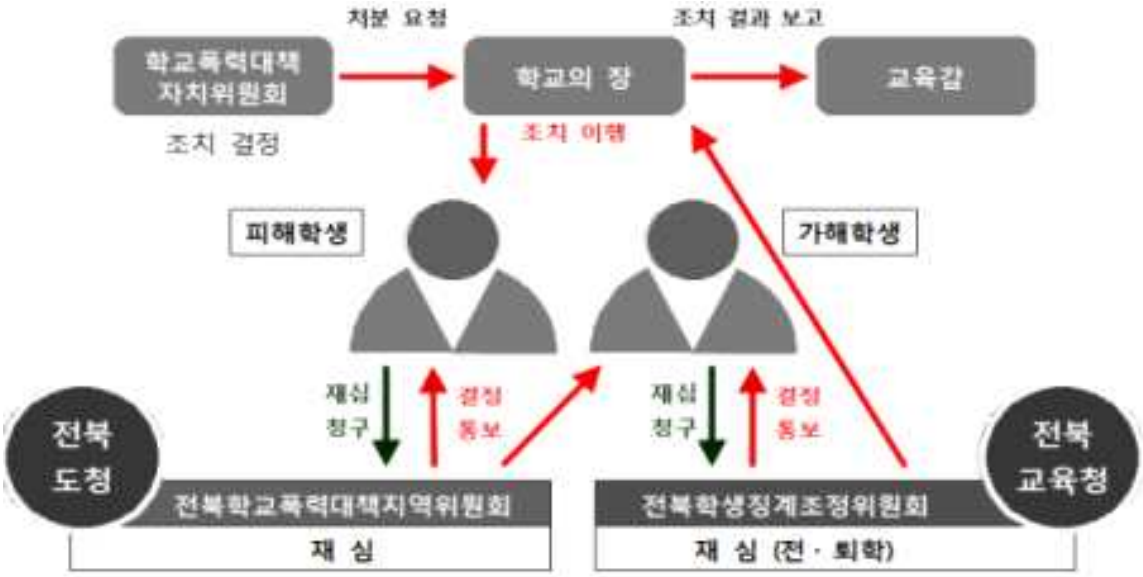

○ 재심청구 기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조치를 받은 날: 도달주의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 청구(초일불산입)
- 예) 7월 1일 조치 결정, 7월 2일 결정통보서 발송, 7월 4일 결정통보서를 수령했다면 7월 19일까지(초일불산입) 재심청구 가능(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청구 가능)
○ 재심 청구로 가해학생 조치가 집행 정지된 경우: 피해학생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수반
- 집행 정지가 되었다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우선 기재하고 재심 결과에 따라 후 정정

◩ 피해 학생 재심 청구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 목적: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 조정(상향 요구)
- 청구기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담당기관: 전북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전북도청_063-280-2533)
- 제출서류: 재심청구서, 청구내용, 자치위원회 결정통보서(겉봉투 포함), 증빙 자료 등
  - 증빙자료: 사진, 진단서, SNS 캡쳐본, 녹취록 등

◩ 가해 학생 재심 청구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 목적: **전학, 퇴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처분 취소 요구
- 청구기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담당기관: 전북학생징계조정위원회(전북교육청_063-239-3743)
- **전학 및 퇴학 조치가 취소된 경우: 자치(선도)위원회 재개최하여 관련학생 조치 결정**

◎ 제출서류: 재심청구서, 청구사유서, 자치위원회 결정통보서(겉봉투 포함), 반성문, 증빙 자료 등
- 증빙자료: 사진, 진단서, SNS 캡쳐본, 녹취록 등

◩ 행정심판 및 (행정, 민사)소송

◎ **행정심판**

- **근거: 행정심판법 제3조**
- 목적: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 행정청: 국공립학교장,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등
  - 사립학교 재학생은 행정심판 청구 불가(법원_민사소송 제기)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 재심 위원회 대상 행정심판 제기: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청구
- 집행정지: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서만 집행 정지
  - 통상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청구
- 담당기관: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전북교육청_063-239-3233)
- 제출서류: 온라인 행정심판(https://jbe.simpan.go.kr) 활용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배너 탑재)**

◎ **행정소송**

- **근거: 행정소송법**
- 목적: 행정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
  - 행정청: 국공립학교장,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등
  - 사립학교 재학생은 행정소송 청구 불가(법원_민사소송 제기)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청구
  - 취소를 구하는 소송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제기 가능
- 집행정지: 법원의 가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있어야 집행이 정지됨
  - 통상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시 가처분 효력정지도 함께 제기
- 담당기관: 전주지방법원 본원(063-259-5400)

◎ **민사소송**

- **근거: 민사소송법**
- 목적: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 **사립학교장과 학생과의 관계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로 민사소송을 제기**
- 청구기간: 기간의 제한이 없음
  - 취소를 구하는 소송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 제기 가능
- 집행정지: 법원의 가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있어야 집행이 정지됨
  - 통상적으로 민사소송 제기 시 가처분 효력정지도 함께 제기
  - 담당기관: 전주지방법원 본원(063-259-5400)

2-2-5 성관련 사안 대응 체계 강화

◪ 성 관련 사안의 정의 및 대처 방안

-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등)은 학교폭력에 포함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법을 적용하여 적절한 보호와 교육적 조치를 하여야 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엄정 대처 (사법적 처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교육적 선도 조치

- 사안 보고: 48시간 이내 (중대 사안은 즉시 유선 보고)
  - 보고 절차 및 방법: 유선보고 후 서면 사안보고(FAX)
    - 학생 간 사안: 각급학교 → 관할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교사로부터 학생이 피해를 당한 사안: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 학생으로부터 교사가 피해를 당한 사안: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신고의무 [법률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체장과 종사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신고기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구두로 신고한 것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전문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별도로 수사기관(경찰, 학교전담경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교직원이 개인상담 과정을 통해 피해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에게 신고의 의무에 대해 알리고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관련 법률에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 여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률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비밀누설 금지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는....(중략)....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성 관련 사안 조사 및 자치위원회 개최

❍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따르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성 관련 사안조사 유의사항

- 가해학생과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통한 심신안정, 비밀유지, 인권보호 철저
-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전문기관 연계 및 맞춤형 지원 필요
-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보호자, 법정대리인 등)를 동석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동성 조사자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관련 학생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강제적인 조사로 인해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관련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진술권 행사 제약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특성을 감안하여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함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피·가해학생 구분이 불명확할 때)**

❍ 성관련 사안은 사안 초기에 피·가해학생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육부 지침에 따라 3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3주 이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사진행 상황, 수사결과 전 관련학생 조치 방안 등을 논의 후 조치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리고

❍ 차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피·가해학생 조치를 결정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인 경우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가 다른 경우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음
❍ 학교의 여건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해 A와 B학교에서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각의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교는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내리고 있음
❍ 이때,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 경우
- 피해학교 측은 피해학생 의사에 따라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미 개최 동의서 필요)
- 가해학교 측은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내려야 함

학교장 선 조치: 피·가해학생 구분이 명확한 사안인 경우에만 가능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 가해자는 수사기관의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
  - 피해학교는 피해학생 의사에 따라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미 개최 동의서 확인)
-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피해학생 측은 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서면진술로 대체 가능(사전고지)
- 가해학생이 검찰 및 경찰에서 처분을 받고 온 경우
  - 검찰 및 경찰의 처분과 학교폭력법상의 교육적 조치는 별개이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 피·가해학생을 위한 대책

피해학생을 위한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력 회복을 중점으로 하는 상담 및 보호조치 실시
  - 피해학생 중심의 사안처리 실시
- 피해학생이 결석하는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필요)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 마련
  - 성적 등의 평가에서 불이익 금지(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성적 산출)
- 위(Wee)센터, 성폭력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 성매매 범죄로 검사의 수강명령 및 교육, 상담과정을 이수한 경우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

가해학생을 위한 대책

-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강화(이수시간 등)
- 성 관련 전문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지정,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 조기 교정교육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이수 권장

◩ 성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

성 관련 사안을 인지할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수사기관: 경찰, 검찰, 학교전담경찰관 등(성폭력 전문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님)

- 피해자 측이 신고를 원치 않더라도 교직원의 신고 의무를 고지한 후 반드시 신고

◎ 피·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일 경우 공동자치위원회 개최(권장)

◎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 학교는 3주 이내에 자치위원회 개최

- 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수사 진행 중인 사안임을 통지
-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학생에 대한 대책 논의 및 '조치유보' 결정
-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자치위원회 재개최: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기관으로 응급조치, 상담, 법률적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역명	시설명	전화번호	운영 주체
전주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부설	236-0151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새벽이슬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223-3015	사)행복나눔지원센터
	호남 성폭력 상담소	286-1366	개인
	전주 다솜 성폭력 상담소	223-5683	개인
	전북해바라기센터(구 원스톱지원센터)	278-0117	전북대병원
	해바라기센터(아동)	246-1375	여성가족부
	대한법률구조공단	251-4034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긴급전화 1366	227-8832	여성가족부
군산	군산 성폭력 상담소	442-1570	개인
	로뎀 성폭력 상담소	445-9192	개인
익산	익산 성폭력 상담소	834-1366	개인
정읍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정읍지부	537-1366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시민성폭력상담소	536-1369	개인
남원	남원 YWCA	625-1316	사)남원 YWCA
	남원 성폭력 상담소	635-0711	개인
김제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김제지부	546-8366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2-2-6 학생자살(시도)사안 위기개입 역량 강화

◩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위기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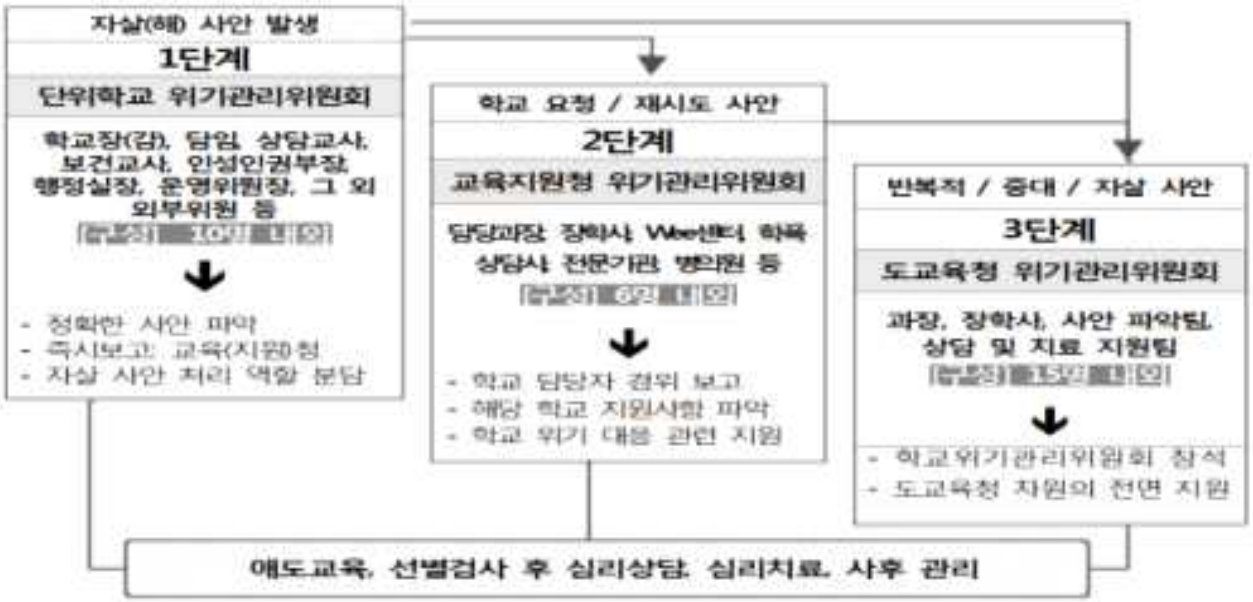

◍ 각급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절차도(자살사안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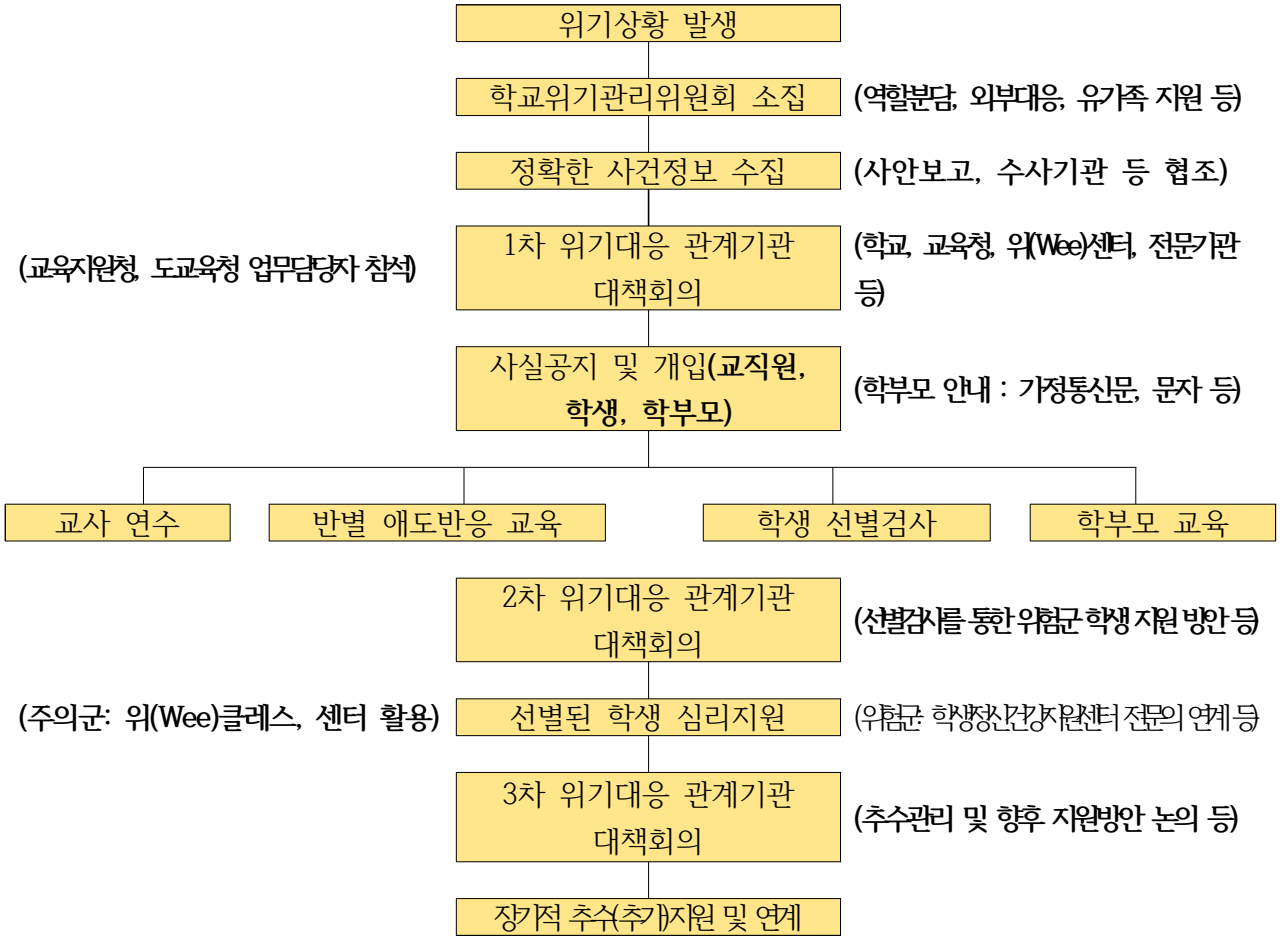

◩ 자살시도 및 자해학생 의료비 지원

- 목적: 자살시도 학생 등 자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적 접근을 높여 자살예방 및 재발방지를 도모하기 위함
- 지원기간: 2019년 4월 ~ 2020년 2월(교육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자살시도, 자해, 고위험군 학생 중, 교육감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생
- 지원금액: 총 6백만원 내 지원(정신과 치료비 300만원 내, 상해치료비 300만원 내)
- 지급절차: 최초 치료비 지원 신청 후, 3개월 이내 청구(1회에 한해 추가 청구 가능)

- 신청

학교장이 인성건강과로 신청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	교육부
공문발송 (신청서류 첨부)		교육부로 지원요청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

- 신청서류 : 자살시도 사안 보고서 1부, 자살시도 학생내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보호자 동의서 1부
- 지원을 요하는 경우 : 신청서류 4종 공문으로 제출_본청 인성건강과
- 지원을 요하지 않는 경우 : 자살시도 사안 보고서만 제출_관할교육지원청

- 청구절차

학부모 의료비 선납	➔	학교장이 인성건강과로 청구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	교육부
관련서류 학교에 제출		청구관련 공문발송		교육부로 청구		대상학생 보호자 통장으로 후 지급

- 청구서류 : 자살시도 의료비 지급 청구서(학교장 직인 필) 1부
  보험회사 제출용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_세부내역 확인 가능) 1부
  보호자 통장사본 1부, 학교사업자 등록증 1부
- 청구기한 : 신청 후, 3개월 이내 청구(추가 청구는 1회에 한함)

2-2-7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 **용어 정리**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 아동 학대와 관련한 처벌 근거

◍ **형법에 의한 죄**

-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유기, 방임 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 유의사항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광의적 개념'이다.

◍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 기관에서의 범죄와는 다를 수 있다.

◍ 학대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대상, 상담, 교육 대상이 될 수 있다.

※ **참고사항** **체벌 관련 판례**

-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방식의 훈육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에 꿀밤을 주듯이 때리거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를 한 경우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였음(춘천지법 2017.1.19.) 본 판결의 취지는 교사에 의한 체벌 행위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으며,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신체를 때리는 방식의 훈육은 위법한 행위로 보았다는 것임
- 교사에 의한 체벌의 경우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생체벌(학생인권교육센터)로 처리되며,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학생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에 대한 교육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참고사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6 교육기준**

구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주기 (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교육방법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장소·상황별 역할극 / 시청각 교육 / 사례 분석		
교육 내용	**초등학교 취학 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예방법과 대처법	1.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개념 2. 성폭력의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4. 나와 타인의 권리 인식	1. 학대 및 성폭력의 개념 2.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학대·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 4.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 교육대상: 각급학교(유·초·중·고) 및 특수, 각종학교 학생
- 교육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 교육내용: 아동의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상황 시 아동의 대처법을 알려주고, 역할극 하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번호 안내 등
- **예방교육 시 활용 자료**

관련부처	내용
교육부	교육부(www.moe.go.rk)/정책홍보/자료실/홍보동영상/아동학대예방 동영상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정보/교육자료 (인쇄물, 동영상)

- **아동학대 예방의 날(매년 11월 19일) 및 예방 주간 운영**

◩ 신고의무자 교육

◍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교육복지사 포함) 등)
- **신고 의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112, 학교전담경찰관 포함)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3조)

◎ 교육방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교육 내용: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사례 개입 과정,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신고의무, 신고요령, 신고인의 신원보장,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내용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학부모 교육

◎ 교육방법

- 입학설명회, 학교설명회 등 학부모대상 학교 행사 시 부모교육 실시
- 교육자료 배포, 동영상 상영, 강의 등

◎ 교육내용

- 아동 중심의 양육(훈육) 방법, 아동학대 예방 사업 안내(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학대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부모의 역할 등

◩ 가정폭력 예방 교육

◎ 관련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매매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교육시간 및 실적 입력

- 연 1회 이상
- 필수 교육대상: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교직원) 및 학생 등
- **매년 2월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 입력**

◎ 교육내용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부모교육」,「아동안전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도 예방교육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

※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아동학대 사안 보고 및 신고 절차

◎ 상담 및 신고

- 112로 즉시 신고하기
  -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의심되는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 아동 보호가 응급한 경우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신고하기**
  - 적절한 양육 환경인지 의심되거나, 멍 상처가 보이지만 학대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적인 아동학대 신고 접수기관이므로 상담을 통해 바로 신고 접수 가능함
- 교직원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 가해자인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
❍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 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한다.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다.
❍ 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 신고자 보호 강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 (동법 제62조 제2항) 신고인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 보고(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한 보고 체계)

- 각 급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서식15 / 102쪽
- 언론보도 등 중대사안인 경우 유선 병행 서식16 / 103쪽
  - 아동학대(가정폭력) 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 및 사안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시군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보고
• 아동학대 신고 및 최초 보고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최종 보고 실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비밀 엄수

- 교직원은 피해아동의 신변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비밀엄수의무를 지켜야 함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1항)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교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학대 사안 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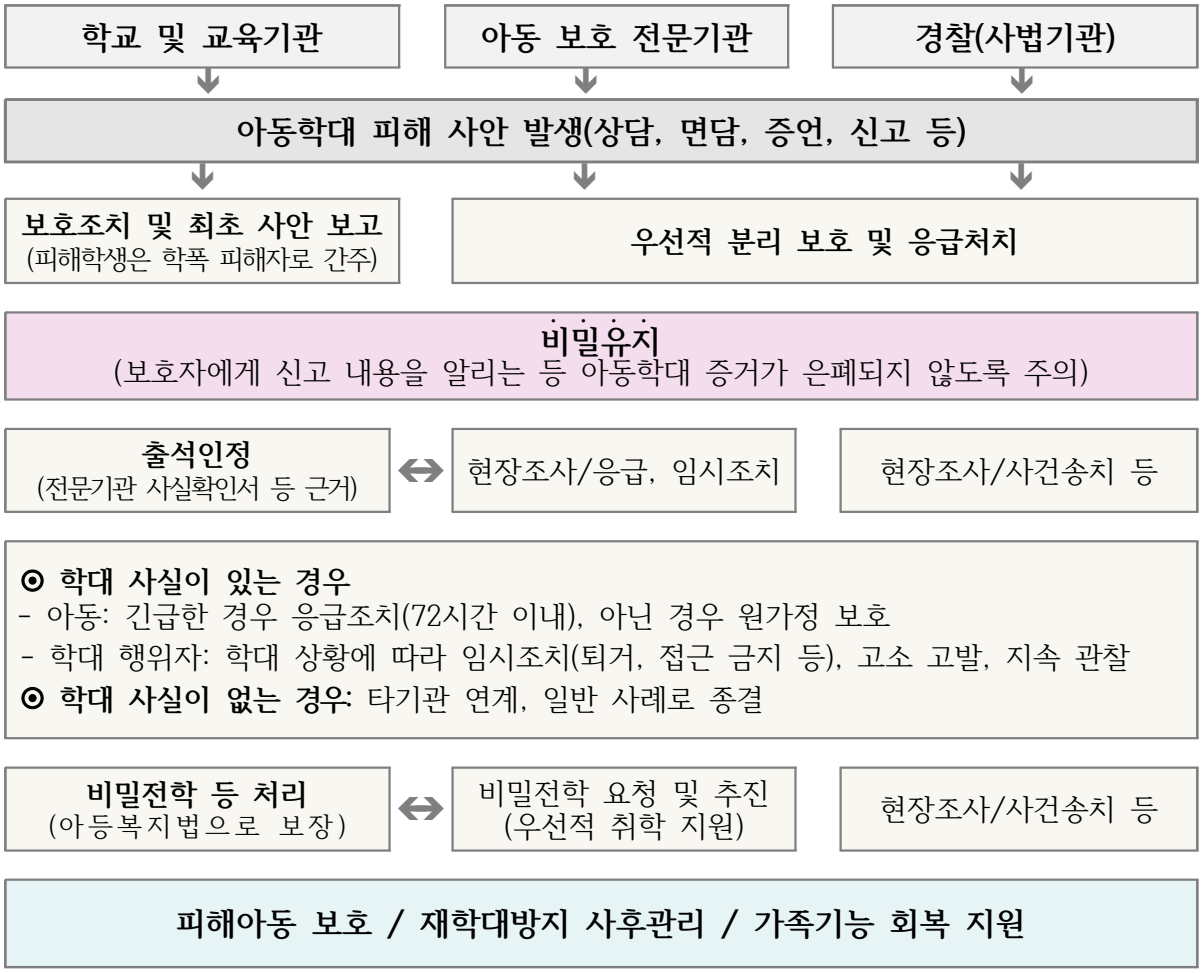

◩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함

순	기관명	관할 시군구	주소	기관 대표번호
1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	063-283-1391
2	전라북도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남원시 시청로 41	063-635-1391
3	전라북도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익산시 인북로 112	063-852-1391

◩ 행정사항

-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처리되어 피해자 보호를 받아야 함.
- 아동학대 사안 보고 안내
  - **교육지원청 Fax 보고 서식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서식15/ 102쪽
  - 아동학대(가정폭력) 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 및 사안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아동학대(가정폭력) 사안 발생 및 전문기관의 아동 일시보호조치 시 최초 보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불가한 경우도 사안 최종보고 필요
  -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시군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보고

2-3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2-3-1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지원 추진 배경

- 초등학생 유괴, 납치 사건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사회적 우려 확산
-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초등학생의 안정적 등·하교 안전대책 마련
-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 및 어린이 대상 범죄 사전 차단

◩ 2019학년도 초등학생 안심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 2019학년도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이용 희망신청
- 초등학생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계획 안내: 2019. 1월 공문 발송
- 초등학교 안심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교를 대상으로 운영계획 수립
  - 학교별 통신사 선정은 학교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실시

◩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내용

- 운영기간: 2019. 3월 ~ 2020. 2월
- 예산지원 기준: 희망신청교의 총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액 배분
  - 2019학년도 163교 선정, 690,000천원
- 지원 대상
  - 1~3학년 중 사회배려대상자(저소득층 학생, 다문화학생 등) 우선지원
  -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지원내용**

구분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비고
서비스 내용	**① 등·하교 문자 알림** ② 비상경보 알림 ③ 어린이안심 보험 가입 ④ 위치 전송 ⑤ 학교외 출·입 정보 알림	④,⑤항의 서비스는 통신사별 제공 유·무 다를 수 있음.

서비스 지역	❍ 교문 등 주변	
단말기 및 월 이용료	❍ 단말기 : 무료 ❍ 월 이용료 : 5,500원 한도	

※ 월 실제 이용료는 통신사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용 학생수가 많을 경우 실제 월 이용료는 2,000원~ 3,000원까지 낮아질 수 있음.

2-3-2 배움터자원봉사자(배움터 지킴이) 운영

◩ 2018학년도 배움터자원봉사자 운영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18.5.)에 따른 지침 변경

◩ 2019학년도 배움터자원봉사자 운영계획 수립

◍ 2019학년도 배움터자원봉사자 운영 계획 알림 : 2019. 1월
(국민권익위원회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방안 반영)

◍ 배움터자원봉사자 운영계획 변경 수립 및 추진
- 2019학년도부터 배움터자원봉사자를 공정한 선정기준. 심사로 위촉공고 운영

◍ 추진 일정

운영계획수립 (2019.1월초)	⇨	학교장 설명회 (2019.1.28.)	⇨	학교별 공고 및 선정(위촉) <2월>	⇨	예산교부 (3월초)
▸2019운영계획 (지침) 수립 ▸학교 안내		▸배움터자원봉사자 운용요령 설명회 (공정한 선정 절차 등 안내)		▸배움터자원봉사자 운영 학교 자체계획수립 ▸위촉공고 및 선정 ▸위촉인원 교육청 제출		▸해당학교에 활동비 교부

◩ 배움터자원봉사자 배치 운영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의 학생보호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 **사업 운영개요**
- 대상교 : 초·중·고·특수학교 등 188교
- 기간 : 2019. 3. ~ 2020. 2.
- 운영예산 : 금1,263,360천원(목적사업비로 교부)

- 배움터자원봉사자 공정한 선정절차 준수
  - 운영방법: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자를 배움터자원봉사자로 위촉하되
  - 위촉 공모와 심사 시 자격, 면접 등 심사기준 운영
  - 배움터자원봉사자 재위촉 횟수를 1~2회로 제한
  - 예외사항
    - 해당교 정원초과로 탈락한 경우 지원자의 동의를 얻어 인근학교 충원가능
    - 지원 인원이 부족할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2회 초과하는 사람도 충원 가능
  - 운영시간: 주 15시간 미만으로 운영(취약시간대 위주로 학교실정에 따라 협의 후 결정)
  - 봉사활동 실비(교통비, 식비 등): 시간당 10,000원, 월 560,000원
  - 주요 활동 내용
    -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및 학교 내·외 순찰
    -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 학교안전을 위한 활동
    -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봉사활동에 속한 역할을 부여

2-3-3 사회복무요원(학생보호인력) 운영(초등학교 우선배치)

◩ 사회복무요원 운영 추진 배경

- 2016학년도까지 운영했던 학교안전지킴이(경비인력) 대체 방안
- 최근 발생한 서울초등학생 인질사안과 전주 관내 초등학교 성범죄경력자 학교 침입과 초등학생 성희롱 발생으로 학부모 민원 요청(안전지킴이 배치요청)
-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에 학생보호활동 인력 배치 필요

◩ 사회복무요원 운영 추진 목적

-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생 안전강화와 학교폭력예방 역할 수행
- 청년들의 예외 없는 병역의무(사회복무)를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이행

◩ 2019학년도 사회복무요원 운영내용

- 사업예산 : 588,240천원
  - 월급여,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 보상책임보험료 1인 연**7,353천원** 지원(상등병기준)
- 운영기간 : 2019. 3월 ~ 2020. 2월
- 배치기준 : 사회복무요원 배치 희망 신청교 중 초등학교 80명
  (소집인원에 따라 3월부터~9월까지 배치하되 전반기 완료 예정)
- 사회복무요원 업무내용
  -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기타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03

위기학생지원을 위한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3-1. 소통과 공감 따뜻한 학생 상담활동 강화

3-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강화

3-1 소통과 공감 따뜻한 학생 상담활동 강화

3-1-1 위(Wee)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

- ❍ 학교 현장의 위기사안 예방 및 체계적 사후개입 능력 강화
- ❍ 상담전문인력(학교상담실, 위(Wee)센터의 상담 전문역량 강화
- ❍ 학교상담실(위(Wee)클래스), 위(Wee)센터 운영 매뉴얼 통한 상담활동 표준화·체계화
- ❍ 복합적 위기상황(사이버폭력, 가정문제, 학교부적응 등)에 따른 대응센터 운영

◩ 위기사안에 대한 상담 및 개입 강화(자살, 학업중단,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 상담프로그램 지원
- 대상: 희망학교, 중대 사안 발생학교
- 운영: 2019학년도(4,000만원 / 도교육청 예산)
- 내용: 위기상황 예방 및 사후 심리지원 프로그램 / 응급심리지원(애도교육, 심층 심리검사, 개인·집단상담) / 학생·교사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등

◍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사후관리 및 위(Wee)센터 학교방문 심층평가 지원
-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및 신청 학교
- 운영: 학교담당자 신청 → 위(Wee)센터 전문인력 방문, 심층평가 및 상담지원
- 내용: 상담(개인·집단상담 / 학부모상담), 부모-자녀 집단프로그램(함께 걷는 어깨동무) 심층평가(KPRC, PAI-A, MMPI-A, AMHI등), 전문기관 연계지원(심리치료비 지원)

◍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내실화
- 대상: 학업중단 위기학생
- 내용: 상담 및 다양한 체험활동 통한 자기이해 및 동기(학업, 진로 등)강화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상담(개인/집단/학부모), 심리검사(진로/성격/가치관 등), 다양한 체험활동(스포츠, 문화, 봉사, 예술, 제작 등)

◩ 학교상담실, 위(Wee)센터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 위(Wee)센터 사례회의 활성화
- 대상: 위(Wee)센터 전문인력 및 전문상담교사
- 운영: 주 1회 실시(회의 여건 마련 및 평가 반영 통한 운영 강화)
- 내용: 상담에 대한 다양한 접근전략 공유 및 동료장학 피드백 통한 상담역량 강화

◍ **상담역량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슈퍼비전 지원**
- 대상: 위(Wee)센터 전문인력 및 전문상담교사, 관내 학교상담실 전문상담교사
- 운영: 전문인력 개인당 연 1회 실시, 학교상담실 교사 참여
- 내용: 슈퍼바이져(상담 수련 전문가)가 학생 상담과정에 대한 전문적 피드백, 효과적 상담전략 제시, 상담개입 및 접근 전략에 대한 전반적 평가, 정보제공

◩ 학교상담실, 위(Wee)센터 운영 매뉴얼 제작, 상담활동 표준화・체계화

◐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상담 지침 마련

◐ 학교상담실 업무 및 상담 매뉴얼 제작

- 표준화된 학교상담실 업무 매뉴얼 마련 및 공유
- 관련 법령에 따른 상담기록의 작성-활용-관리의 체계화

◐ 위(Wee)센터 업무 및 상담 매뉴얼 제작

- 위(Wee)센터 업무 유형별 전략 제시를 통한 상담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위(Wee)센터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맞는 특색사업 활성화
- 매월 위(Wee)센터 실장 협의회를 통한 업무 및 매뉴얼 공유
- 위(Wee)센터 전문인력 직군에 따른 역할 제시

◩ 복합적 위기상황(사이버폭력, 가정문제, 학교부적응 등)에 대한 대응센터 운영

◐ 사이버폭력 거점 위(Wee)센터 운영강화

- 목적: 지역 내 사이버 폭력 대응 및 예방의 선도적 허브 역할 수행
- 내용: 사이버폭력 전문 강사 구성 및 연수(1~2월), 전문강사단 협의회(2월), 예방 교육 프로그램계발 및 학급별 예방교육 실시, 홍보활동, 사이버 폭력 대응
- 운영: 전주 위(Wee)센터 지정

◐ 가정형 위(Wee)센터 신설 운영

- 목적: 위기학생을 위한 안정적 돌봄·교육·상담치료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 대상: 학교폭력, 가정문제(폭력, 방임 등),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한 중·고등 위기 남학생

기관명	대상 성별	학교급	학적	숙박 여부	입소 기간	최대 입소자	운영 방식	비고
전북 가정형 위(Wee)센터	남	중、고	소속 학교	기숙	3~6 개월 (연장가능)	10명	직영	협치 시스템 운영

- 운영내용: 상담 및 치유, 특성화 사업(감수성 훈련, 공감 및 사회성 훈련 등), 특성과 교육과정(개인 맞춤형 학습 멘토링, 대안교육), 예술·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캠프, 음악, 미술 등), 교육연수

3-1-2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상담 내실화

◩ 피해학생 상담내실화

❍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 필요
❍ 피해학생에 따른 적절한 위기상담프로그램 개입
(사회기술훈련, 자존감훈련 프로그램 등)
❍ 가해학생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조치를 병행하고, 피해학생 신변보호

- 학교상담
  - 예방교육: 학생교육, 학부모교육, 교사연수
  - 피해학생 상담 및 치료권고, 전문기관 연계
  - 학부모상담, 부모 자녀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 위(Wee)센터 상담
  - 전문상담실시, 자존감 및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진행
  -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학생은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사후관리 진행
- 지역사회
  - 전문기관(법률, 의료, 상담, 복지기관) 연계
  - 사후관리: 동반자, 멘토 연계

◩ 가해학생 상담내실화

❍ 정확한 사실 파악에 주력하기(객관적 증거 및 사실 조사 등)
❍ 가해학생의 현 상태와 특성파악 및 선도 가능성 평가하기
❍ 가해학생에게 가·피해학생 어느 쪽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은 주지 않기
❍ 가해학생에게 어떤 경우에도 학교폭력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시키기

- 상담주간행사: 학교폭력 실태점검 – 쪽지설문, 자체 실태조사 실시
- 학교상담
  - 1:1상담, 집단상담, 특별교육진행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조정, 또래중재, 또래상담 활성화
- 위(Wee)센터 상담
  - 전문상담실시, 분노 조절 및 감정조절 훈련 프로그램 진행
  -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학생은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사후관리 진행
- 전문기관 연계
  - 가정형 위(Wee)센터에 입소 가능, 개별 상담치료 및 심성교육실시
  - 전문병원, 특화된 전문상담센터, 특화된 복지기관 연계하여 치유

3-1-3 학급 담임교사의 상담역량 강화 지원

◩ 상담주간 학급 담임중심의 상담활동 강화

- 대상: 담임교사
- 시기: 학기 초 상담주간
- 운영내용
  - 신학기 교우관계, 학교생활 등 상담을 통해 학교적응력 향상 지원
  - 학교부적응, 가정 내 위기요인 조기 발견 및 학생 보호, 예방
  - 단위학교 상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 협력 강화

◩ 행복한 교실문화 조성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

- 대상: 교원
- 운영기간: 연중
- 운영기관: 전라북도교육연수원(중앙교육연수원 컨텐츠 이용)
- 연수내용
  - 사례로 배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 학생들과 진심으로 공감, 소통하기
  - 전문가가 알려주는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개입
  -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등

◩ 위(Wee)센터 중심의 교원연수

- 대상: 관내 담임교사 및 상담업무 담당교사
- 연수일시: 지역 위(Wee)센터 별 운영
- 연수방법: 집합 연수
- 연수내용: 소통과 협력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 교원 연수운영 시 상담연수 개설로 상담역량 강화

- 대상: 담임·신규교사 연수, 자격연수, 직무연수 과정 등
- 운영기관: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등 교원연수 기관
- 반영시간: 연수 과정 당 2시간 이상
- 연수내용: 존중과 사랑이 가득한 교실

3-1-4 또래 상담 활동 강화

◩ 기본 방향

- 자치활동 활성화 통한 학생중심의 갈등 해결
- 갈등 상황이 신체 및 언어 등의 학교폭력으로 심화되는 과정 예방

- 학급 내 갈등 상황 발생 시 긴급한 대처 및 화해 조정
- 또래상담자 통한 위기상황 조기개입 및 교사·상담전문 인력의 심리지원 강화

◩ 세부 운영 계획

- 대상학교: 초·중·고 희망학교
- 운영시기: 2019. 3월~12월
- 주요 운영 내용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학교, 학급별 또래중재•조정•상담자 선정 및 운영	선발 과정: 희망학생에 대한 학부모 동의, 학생투표, 교사추천 학급 내 교우관계 및 친밀도 높은 학생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학생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 통한 또래중재·조정·상담 운영
또래중재•조정•상담 양성교육 지원	학교별 책임교사에 의한 역할 및 운영 교육 도교육청 교육지원 : 찾아가는 또래 중재·조정·상담자 양성 지원 위(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양성교육 지원
동아리 운영	학교 내 동아리 형태로 운영 동아리 내 상담 정보 공유, 사례회의, 위기사안별 상담·중재·조정 방법 나눔 학급행사, 토론회, 캠페인, 홍보활동 운영

3-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강화

3-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추진근거

- ❍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 전라북도 대안교육 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 ❍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 ❍ 2019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계획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목적

- 대안교육 희망자, 학교 부적응 학생,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기회제공
- 학생의 다양한 소질 및 적성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대안교육 실현

◩ 2019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

- 2019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

- 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2019.1월)
- 전년도 지정기관 15기관 (신규-가정형위센터 나-움트리학교, 어울림힐링학교)
-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기관 지정(전년도 지정기관도 모두 재신청, 재지정)

◎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및 지원

- 운영기간: 2019.3월 ~ 2020.2월
- 각급 학교별 학생의 위탁교육이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교육 운영비 지원
- 당해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한 위탁기관 교육운영 내실화 도모
-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위탁교육기관과 원적교와 연계한 통합교육의 충실한 운영 상황 수시 확인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수탁 절차

학생·학부모의 신청 ➡ 원적 학교장이 위탁교육 여부 결정 ➡ 원적 학교장이 위탁기관과 협의 후 위탁기관 결정 ➡ 원적교에서 위탁기관으로 추천 ➡ 위탁기관에서 원적교로 수탁 여부 통지 ➡ 위탁교육 실시 ➡ 위탁기관은 도교육청 매월 말 수탁현황 제출 ➡ 위탁기관에서 원적교로 위탁교육 결과 통보 ➡ 원적교 출석인정 등 학적사항 인정 ➡ 원적교 복귀 ➡ 진급, 졸업 ➡ 재위탁 시 처음 절차 시행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방침**

-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 일수의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함
- 원적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의 출석 결과를 인정할 수 있음
- 위탁교육기관과 위탁생 소속 학교에서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위탁생을 지도

◩ 2019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현황

순	기관명	운영 과정	운영 형태	설립목적	소재지	연락처
1	꿈누리교실	중·고	통학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전주시	253-2276
2	가정형위센터 “나-움트리”학교	중·고	기숙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남학생)	전주시	236-9801
3	민들레학교	중·고	통학 기숙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여학생) 한부모(미혼모) 청소년	전주시	283-1356
4	전주시청소년 자유센터	중·고	통학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전주시	211-7401
5	명주골학교	중·고	통학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전주시	247-8311
6	움티학교	중·고	통학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팟캐스트 만들기 활용교육	전주시	285-4344
7	어울림힐링학교	중·고	통학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심리분석, 상담프로그램 진행	전주시	237-1134
8	산돌학교	초·중·고	통학 기숙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발달장애) 성인생활을 대비하는 전환교육 활성화	군산시	446-4460
9	다음세대학교	중·고	통학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다문화, 중도입국, 탈북학생)	군산시	452-6326
10	가온누리희망틔움	중·고	통학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군산시	8738-1318
11	익산시청소년수련관 (꿈너머 꿈)	중·고	통학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익산시	838-1700
12	희망샘학교	중·고	기숙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일탈행동에 대한 특별 치료프로그램운영	고창군	562-2811
13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중·고	기숙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 교육 치료·상담 등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	323-2646
14	해맑음센터	중·고	기숙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 교육 예술치료, 상담 프로그램운영	대전시	070-7119-4119
15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	초·중·고	기숙	정서적, 행동적 장애 치료 및 재활 교육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031-333-1900

3-2-2 단위학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강화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의 내실화

○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주 이상의 적정 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대상: 학업중단 위기 및 유예, 면제, 자퇴서를 제출한 초·중·고등학생

- 숙려 기간: 기본 2주이며 연장 가능(필요한 경우 학교장 인정 시)
- 출석 인정: 학교 복귀의 경우는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학업중단의 경우 초, 중학교는 숙려 종료 후 유예 처리, 고등학교는 최종 자퇴원 제출일 기준 자퇴 처리
- 상담 기관: 위(Wee)센터, 위(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등
- 주요 운영 내용
  -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학업중단 숙려 기간 제공으로 학업 중단 예방
  - 학업 중단학생 복귀를 위한 복귀지원 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관과 연계
  -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

◩ 학업중단 숙려제 · 꿈키움 멘토단 운영학교 운영

- 대상학교: 중·고등학교 희망 학교
- 운영시기: 2019. 3월~12월
- 주요 운영 내용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부적응 완화하기
  - 학업중단예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적응력 강화 및 위기학생 지원
  - 내용: 상담, 학습, 문화체험, 사제동행, 스포츠, 예술활동 등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징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다수학생 학업중단 학교 특별 관리 지원

- 대상학교: 전년도 학업중단 학생 10명 이상 발생한 고등학교
- 운영시기: 2019. 3월~12월
- 주요 운영 내용
  -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및 관리자인식 제고 협의회 운영
  - 학업중단예방 대응력 향상 및 분기별 컨설팅 실시

부록

1. 2019학년도 월별 학생 생활교육 업무 추진 일정
2. 각종 서식 및 참고법령

부록 1 2019년 월별 생활교육 업무 추진 일정

월	사업명	대상	시기	장소	세부 내용
3월	학교생활교육계획 수립	초•중•고	3월중	각 학교	
	생활교육담당자 협의회	교육지원청장학사 학폭상담사	3.8.	도교육청	2019. 학생생활교육 안내
	학교 인성교육계획 수립	유•초•중•고	3월중	각 학교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초•중•고	3월~4월	각 학교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4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담당교원 자치위원회위원	4월중	교육 지원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법 등
5월	청소년의 달 학생 교원 유공자 표창	학생, 교원	5월중	도교육청	청소년 모범표창 및 교원 유공자 표창
	모범학생 표창	초•특수	5월중	각 학교	어린이날 기념 모범학생 표창
6월	합동교외 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담당장학사, 교사 학폭상담사	연중, 방학기간	취약지역 유원지	생활지도 취약지역 합동교외생활지도
8월	여름방학 중 합동 생활지도 컨설팅	교육지원청	8월중	도교육청	방학 중 합동생활지도 전반 점검 평가
	학교 인성교육 컨설팅	초•중•고	7-8월	각 학교	학교 인성 교육계획 실행 여부 점검
9월	생활교육담당자 협의회	교육지원청장학사 학폭상담사	9월중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 전반
10월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초•중•고	9월~10월	각 학교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인성교육 운영 컨설팅 평가	초•중•고	9월~10월	각 학교	학교 방문형 컨설팅 및 온오프라인 평가
11월	학교폭력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	교육지원청	11월중	도교육청	승진가산점 제출 및 정량평가 점검
	인성교육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직, 시민 등	11월 중	도교육청	2019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12월	수능이후 연말연시 합동 생활교육	교육지원청	12월중	도교육청	수능 이후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시도평가 최종 실적 제출	초•중•고 교육지원청	12월중	도교육청	정량평가 실적 제출
	청소년단체 활동 유공자 표창	청소년단체 담당	12월중	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유공자 표창
1-2월	학생중심의 내실있는 졸업문화 형성	각 학교	1-2월중	학교	졸업식 문화 내실화 추진
	2019학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 안내	도교육청	2월중	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안내

부록 2 각종 서식 및 참고 법령

분야	서식 제목	쪽수
학생(선도)징계 관련	1. 학생 징계 관련 사안 보고	67
	2. 학생사안 진술서	68
	3. 교직원 사실 확인서	69
	4. 학생선도(징계)위원회 회의록	70
	5. 위원회 결정 통보서	71,72
	6. 이의 신청서	73
학교폭력 관련	7.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및 사안접수보고서	74,75
	8. 학교폭력 선 조치 보고서	76
	9. 사안 보고	77
	10. 학교폭력 확인서	78
	11.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록	79,80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 개최 동의서	81
	13. 담임교사 또는 전담기구 해결 사안 확인서	82
	14.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및 비밀 서약서	83
	15. 위촉장	84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명부	85
	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요청서	86
	18. 서면 진술(의견서)	87
	19. 자치위원회 위원 등록부	88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요청서	89
	2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통보서	90
	22. 징계(전학,퇴학)재심 청구서	91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92
	24. 아동학대 사안 보고	102
공통	25. 중대 사안 보고 형식	103
현장체험학습	※ 도교육청홈페이지/정보공개/현장체험학습/현장체험학습자료방 탑재	
봉사활동	※ 도교육청홈페이지/학교교육/학생봉사활동/자료실 탑재	

결재	담 임
	전 결

[서식 1] 학생 징계 관련 사안 보고

학생 징계 관련 사안 보고

전라북도○○교육지원청
○ ○ ○ 학 교 장 (학교장 직인)

학교명 :	○○학교	교장	성명: ○○○ H·P: 000-0000-0000	교감	성명: ○○○ H·P: 000-0000-0000
관련 학생	(학 교) (학 년) (성 명) (성 별)				
	(학 교) (학 년) (성 명) (성 별)				
발생 일시 접수 날짜	2019.00.00.00:00 2019.00.00.	보고 날짜	2019.00.00.		

사건장소 및 주요 내용	※ 자세하게 작성 요망

특이사항	※ 언론 보도 및 경찰 고소 내용, 특수교육 대상 학생, 장애학생 여부 등

위 원 회 개최(예정)일	2019년 0월 0일 0시

□ 조치 사항(조치 사항이 있으면 기록)

구 분	조치 사항
관련 학생	○○○ :
	○○○ :

□ 향후 계획

학 교	○ 상담 등의 조치 지속적인 실시 등
교육지원청	○ 관련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도 당부 등

작성자	학교	직위 :	성명 :	전화 :
	교육지원청	직위 :	성명 :	전화 :

[서식 2] 학생 사안 진술서(예시)

학생 사안 진술서(예시)

<table>
<tr><td>성 명</td><td></td><td>학년 / 반</td><td>~</td><td>성별</td><td>남 / 여</td></tr>
<tr><td rowspan="5">사 안

내 용</td><td>누 가</td><td colspan="4">(관련 학생 모두)</td></tr>
<tr><td>사안 기간</td><td colspan="4">① 처음 발생 일시 :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td></tr>
<tr><td>어디서</td><td colspan="4">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td></tr>
<tr><td>무엇을
/어떻게</td><td colspan="4">(상황, 기간 등 기록)</td></tr>
<tr><td>왜</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목격한 학생(모두)</td><td colspan="4">① 같은 반 친구( )
② 다른 반 친구( )
③ 기 타( )</td></tr>
<tr><td colspan="2">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작 성 일</td><td colspan="2">20 년 월 일</td><td>작성 학생</td><td>(서명)</td></tr>
</table>

[서식 3] 교직원 사실 확인서(예시)

교직원 사실 확인서(예시)

<table>
<tr><td>대상 학생 성명</td><td></td><td>학년 / 반</td><td>/</td><td>성별</td><td>남 / 여</td></tr>
<tr><td rowspan="5">사 안

확 인</td><td>누가</td><td colspan="4">(관련 학생 모두)</td></tr>
<tr><td>사안 기간</td><td colspan="4">① 처음 발생 일시 :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td></tr>
<tr><td>어디서</td><td colspan="4">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td></tr>
<tr><td>무엇을/
어떻게</td><td colspan="4">(상황, 기간 등 기록)</td></tr>
<tr><td>왜</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td></tr>
<tr><td>작 성 일</td><td colspan="2">20 년 월 일</td><td>작 성 자</td><td colspan="2">(서명)</td></tr>
</table>

[서식 4] 학생선도(징계)위원회 회의록

학생선도(징계)위원회 회의록

제　회 ○○학교 학생선도(징계)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_____명　　❍ 참석위원 : _____명　　❍ 불참위원 : _____명

❍ 회 순

1. 개회　　2. 위원회 개요 안내 -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참석자 소개

3. 제척 기피 회피절차의 진행　4. 담당교사 사안 보고　5. 학생 자기 변론 및 학부모 소명

6. 안건 심의　　8. 의결　　9.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개회, 주의사항,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 가능

❍ 학생의 변론과 학부모 소명, 안건 심의, 의결의 과정은 발언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재심청구 시 제출용으로 학생 징계가 어떤 의견으로 결정되었는지 드러나도록 기재

개회	- 위원장 개회(전체 위원 10명 중 7명 참석으로 위원회
개요안내	- 원만한 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한 주의사항 요약 정리
제척,기피 등	- 제척, 기피, 회피 사유 없음 - 학부모 요청에 의해 ○○○위원 기피
사안 보고	- 간단하게 사안 보고 내용 작성
학생 변론	발언 요지가 드러나도록 기재
학부모 소명	발언 요지가 드러나도록 기재
안건 심의	위원별 또는 발언 순서에 따라 요지가 드러나도록 기재
의결	○○○학생에 대해 위원회 위원들이 본 사안을 심의한 결과 ~점,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조치를 결정함
폐회	이상 제　회 ○○학교 학생선도(징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확인	위원장	홍 길 동 (서명)	위원	홍 길 동 (서명)
	위원	홍 길 동 (서명)	위원	홍 길 동 (서명)
	위원	홍 길 동 (서명)	위원	홍 길 동 (서명)
	위원	홍 길 동 (서명)	위원	홍 길 동 (서명)

[서식 5] 위원회 결정 통보서(퇴학처분 조치 예시)

○○○위원회 결정 통보서(퇴학처분 조치 예시)

학생생활규정 제○조 제○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치를 의결하고 집행을 요청한 바, 관련 학생 및 보호자는 조치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생	학년 반 이름 :	
관련 세부 규정	학생생활규정 제○조 제○항	
위원회 개최일	20○○년 ○월 ○일	
징계 조치	**퇴학처분**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권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퇴학처분 재심 안내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초·중등교육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북학생징계조정위원회(063-239-3743)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이의 제기 및 불복 절차 안내	**국공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063-239-3233)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사립학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학교 담당자 : ○○○, 전화 063-000-0000)

20 . . .

○ ○ 학 교 장 (직인)

[서식 5] 위원회 결정 통보서(퇴학처분 제외 예시)

○○○위원회 결정 통보서(퇴학처분 제외 예시)

학생생활규정 제○조 제○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치를 의결하고 집행을 요청한 바, 관련 학생 및 보호자는 조치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대상 학생</td><td colspan="2">학년 반 이름 :</td></tr>
<tr><td>관련 세부 규정</td><td colspan="2">학생생활규정 제○조 제○항</td></tr>
<tr><td>위원회 개최일</td><td colspan="2">20○○년 ○월 ○일</td></tr>
<tr><td>교육(징계) 조치</td><td colspan="2">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td></tr>
<tr><td>학교 내
재심의 신청</td><td colspan="2">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권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td></tr>
<tr><td rowspan="2">이의 제기 및
불복 절차 안내</td><td>국공립학교</td><td>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063-239-3233)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td></tr>
<tr><td>사립학교</td><td>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td></tr>
</table>

(학교 담당자 : ○○○, 전화 063-000-0000)

20 . . .

○ ○ 학 교 장 (직인)

[서식 6] 이의 신청서(예시)

이의 신청서(예시)

<table>
<tr><td rowspan="3">청
구
인</td><td>성명</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자택)
휴대전화)</td><td>관계</td><td>본 인 (　　)
보호자 (　　)</td></tr>
<tr><td>주소</td><td colspan="4">□□□-□□□</td><td colspan="2">[보호자의 관계]</td></tr>
<tr><td>학생</td><td>성 명</td><td></td><td>소 속</td><td colspan="3">(　　)학교 (　　)학년 (　　)반</td></tr>
<tr><td colspan="2">선도 조치 일자</td><td colspan="2">년　월　일</td><td>선도 조치가
있음을 안 날</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 colspan="2">이의신청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이의 신청
이유</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20　년　월　일

(이의 신청 청구인) :　　(인)

00초、중、고등학교장 귀하</td></tr>
</table>

[서식 7-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학교보관용)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신고, 인지(기관) 관련 사항		신고(인지)내용	보호자 통보 (관련 피·가해 학부모)		확인(결재)
		신고자	기관명 (소속, 신분)		통보일시	통보방법	학교장
2019-1	2019.01.31. 16:30	○○○	○○중 (교사, 학생)	김○○이 정☆☆에게 1월 20일 학교 앞 공원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것을 목격함 등	(피해) 2.1. 14:00 (가해) 2.1. 15:00	전화, 문자	
2019-2							
2019-3							
2019-4							
2019-5							

[서식 7-2]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학교보관용)

<table>
<tr><td>접수
번호</td><td colspan="2">2019-01</td><td>접수
일시</td><td colspan="3">2019년 ○○월 ○○일 ○○시</td></tr>
<tr><td>접수
담당자</td><td>직급</td><td></td><td>성명</td><td></td><td>서명</td><td></td></tr>
<tr><td rowspan="6">관련
학생</td><td colspan="3">관련학생(피해 추정)</td><td colspan="3">관련학생(가해 추정)</td></tr>
<tr><td>성명</td><td>학년/반</td><td>보호자 통보여부</td><td>성명</td><td>학년/반</td><td>보호자 통보여부</td></tr>
<tr><td>☆☆☆</td><td>1/1</td><td>○, X</td><td>○○○</td><td>2/1</td><td>○, X</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유형</td><td colspan="6">☐ 신체폭력 ☑ 금품갈취 ☐ 언어폭력 ☐ 따돌림 ☐ 괴롭힘 ☐ 성폭력
☐ 사이버폭력 및 매체폭력 ☐ 집단폭력 ☐ 기타</td></tr>
<tr><td rowspan="6">신고
(인지)
내용</td><td>누가</td><td colspan="5">○○○이 ☆☆☆에게</td></tr>
<tr><td>언제</td><td colspan="5">1월 20일</td></tr>
<tr><td>어디서</td><td colspan="5">학교 앞 공원에서</td></tr>
<tr><td>무엇을</td><td colspan="5">금품을</td></tr>
<tr><td>어떻게</td><td colspan="5">갈취함</td></tr>
<tr><td>왜</td><td colspan="5">용돈이 없어서, 선물을 사기 위해 등</td></tr>
<tr><td rowspan="6">현재
상태</td><td rowspan="3">피해
추정
학생</td><td>신체</td><td colspan="4"></td></tr>
<tr><td>심리</td><td colspan="4"></td></tr>
<tr><td>정서</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가해
추정
학생</td><td>신체</td><td colspan="4"></td></tr>
<tr><td>심리</td><td colspan="4"></td></tr>
<tr><td>정서</td><td colspan="4"></td></tr>
<tr><td>기타</td><td colspan="6">(언론, 경찰수사, 고소, 소송 여부 등)</td></tr>
<tr><td rowspan="2">타학교
관련
여부</td><td colspan="2">관련학교명</td><td></td><td colspan="2">통보받은 사람
(연락처)</td><td></td></tr>
<tr><td colspan="2">통보일시</td><td></td><td colspan="2">통보방법</td><td></td></tr>
</table>

[서식 8] 학교폭력 선 조치 보고서

학교폭력 선 조치 보고서(자치위원회 보고용)

<table>
<tr><td>접수
번호</td><td colspan="8">2019-01</td></tr>
<tr><td>발생
일시</td><td colspan="8">2019. ○○. ○○.(요일) ○○:○○</td></tr>
<tr><td>조치
일자</td><td colspan="8">2019. ○○. ○○.(요일)</td></tr>
<tr><td rowspan="7">관련
학생</td><td colspan="4">피해학생</td><td colspan="4">가해학생</td></tr>
<tr><td>성명</td><td>학년/반</td><td>성별</td><td>선 조치
내용</td><td>성명</td><td>학년/반</td><td>성별</td><td>선 조치
내용</td></tr>
<tr><td>○○○</td><td>3/1</td><td>남(특수)</td><td>1호, 2호</td><td>○○○</td><td>3/2</td><td>남(특수)</td><td>3호</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안
유형</td><td colspan="8">☐ 신체폭력 ☐ 금품갈취 ☐ 언어폭력 ☐ 따돌림 ☐ 괴롭힘 ☐ 성폭력
☐ 사이버폭력 및 매체폭력 ☐ 집단폭력 ☐ 기타</td></tr>
<tr><td>선
조치
필요성</td><td colspan="8">(사안의 개요, 심각성, 지속성, 집단여부,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가해학생의 태도 등 고려)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함)
(사전 선도조치를 하였다면 필수 문서임)</td></tr>
<tr><td rowspan="3">의견
청취
여부</td><td colspan="4">학 생</td><td colspan="4">학부모</td></tr>
<tr><td colspan="2">일 시</td><td colspan="2">방 법</td><td colspan="2">일 시</td><td colspan="2">방 법</td></tr>
<tr><td colspan="2">2019. ○○. ○○.(요일)</td><td colspan="2">유선, 내교 등</td><td colspan="2">2019. ○○. ○○.(요일)</td><td colspan="2">유선, 내교 등</td></tr>
<tr><td rowspan="2">통지
여부</td><td colspan="4">통지일자</td><td colspan="4">통지방법</td></tr>
<tr><td colspan="4">2019. ○○. ○○.(요일)</td><td colspan="4"></td></tr>
</table>

2019년 ○○월 ○○일

○ ○ ○ 학교장 (인)

[서식 9] 학교폭력 사안 보고

(학교폭력) 사안 보고(교육청 보고용)

보 고 구 분	□최초 □최종	○○교육지원청 ○○○ 학교장	학교장 직인

구 분	단순 폭행	집단 폭행	금품 갈취	따돌림 괴롭힘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학생 체벌	사이버 폭력	기타
체크(○)			○								
										<중복체크>	

학 교 명	○○○학교	교감	성명: ○ ○ ○ H·P: 000-0000-0000	교장	성명: ○ ○ ○ H·P: 000-0000-0000

	피해추정 학생(특수여부 기입)				가해추정 학생(특수여부 기입)			
	학교	학년/반	성별	성명	학교	학년/반	성별	성명
관련 학생	○○중	3/1	남	○○○	○○중	3/1	남	○○○
	○○중	3/1	남(특수)	○○○	○○중	3/1	여(특수)	○○○

발생일시	2019. 00. 00.(요일) 00:00	최초보고	2019. 00. 00.(요일)
접수일시	2019. 00. 00.(요일) 00:00	최종보고	2019. 00. 00.(요일)

사안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특이사항	※ 언론보도 및 경찰 고소 내용 등

자치 위원회 개최(예정)일	2019년 00월 00일 00시(개최일 미정 시_ 개최예정으로 기입)

□ 조치 사항(최초 보고 시 : 선 조치사항 / 최종 보고 시 : 자치위원회 조치사항)

구 분	조치 사항
피해 학생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등
가해 학생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금지 등

□ 향후 계획

학 교	○ 상담 등의 보호 조치 지속적인 실시 등
교육지원청	○ 피.가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도 당부 등

작성자	학 교	직위 :	성명 :	전화 :
	교육지원청	직위 :	성명 :	전화 :

[서식 10] 학교폭력 확인서

학교폭력 확인서(전담기구 사안조사용_피, 가해, 목격학생용)

<table>
<tr><td>접수
번호</td><td colspan="5">2019-01</td></tr>
<tr><td rowspan="2">인적
사항</td><td colspan="2">구분</td><td>성명</td><td>학년/반</td><td>성별</td><td>연락처</td></tr>
<tr><td colspan="2">피해, 가해, 목격학생</td><td>○○○</td><td>3/1</td><td>남/여(특수)</td><td></td></tr>
<tr><td rowspan="6">사안
확인
내용</td><td>누가</td><td colspan="4"></td></tr>
<tr><td>언제</td><td colspan="4"></td></tr>
<tr><td>어디서</td><td colspan="4"></td></tr>
<tr><td>무엇을</td><td colspan="4"></td></tr>
<tr><td>어떻게</td><td colspan="4"></td></tr>
<tr><td>왜</td><td colspan="4"></td></tr>
<tr><td>현재
기분</td><td colspan="5">(현재 감정 등)</td></tr>
<tr><td rowspan="2">원하는
조치</td><td>본인</td><td colspan="4">(목격 학생은 작성 하지 마세요)</td></tr>
<tr><td>상대학생</td><td colspan="4">(목격 학생은 작성 하지 마세요)</td></tr>
<tr><td rowspan="3">도움
필요
항목</td><td>담임교사</td><td colspan="4">(목격 학생은 작성 하지 마세요)</td></tr>
<tr><td>학교</td><td colspan="4">(목격 학생은 작성 하지 마세요)</td></tr>
<tr><td>보호자</td><td colspan="4">(목격 학생은 작성 하지 마세요)</td></tr>
<tr><td>기타
의견</td><td colspan="5"></td></tr>
<tr><td>작성자</td><td>작성일</td><td>2019. ○○. ○○.(요일)</td><td>작성학생</td><td colspan="2">작성한 학생 성명 (서명)</td></tr>
</table>

[서식 11-1]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록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록

결재	교 감	교 장

접수 번호	2019-01		
접수 일시	2019. ○○. ○○.(요일) 00:00		
협의 일시	2019. ○○. ○○.(요일) 00:00 ~ 00:00	협의 장소	
참석 위원			
협의 안건	2019-1 ○○○ 학생 금품갈취 및 폭행 사안에 대한 협의 등		
협의 내용	-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 - 전담기구는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자치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조사된 내용을 자치위원회에 보고 후,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함 - 다만, 경미한 사안으로 조사가 되었고 관련학생 측 보호자들이 조사내용에 동의하였고 서로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담기구 해결 사안으로 자치위원회에 보고 후 종결처리		
참석 확인	학교폭력 책임교사 : ○○○ (서명) 담임교사 : ○○○ (서명) 보건교사 : ○○○ (서명) 상담교사 : ○○○ (서명) ○○교사 : ○○○ (서명)		

[서식 11-2]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사안조사 보고서(자치위원회 보고용)

<table>
<tr><td>접수
번호</td><td>2019-01</td><td>접수
일시</td><td colspan="2">2019. ○○. ○○.(요일) 00:00</td><td>담당자</td><td colspan="2"></td></tr>
<tr><td>사안
유형</td><td colspan="7">☐ 신체폭력 ■ 금품갈취 ☐ 언어폭력 ☐ 따돌림 ☐ 괴롭힘 ☐ 성폭력
☐ 사이버폭력 및 매체폭력 ☐ 집단폭력 ☐ 기타</td></tr>
<tr><td rowspan="6">관련
학생</td><td colspan="4">피해학생</td><td colspan="4">가해학생</td></tr>
<tr><td>성명</td><td>학년/반</td><td>성별</td><td>선 조치 내용</td><td>성명</td><td>학년/반</td><td>성별</td><td>선 조치 내용</td></tr>
<tr><td>○○○</td><td>2/2</td><td>여(특수)</td><td>1호</td><td>○○○</td><td>2/1</td><td>남</td><td>1호~3호</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안
개요</td><td colspan="7">전담기구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td></tr>
<tr><td rowspan="2">관련
학생
(피해
추정)</td><td colspan="2">학생주장</td><td colspan="5">(사안 발단, 과정, 결과, 요구사항 등)</td></tr>
<tr><td colspan="2">보호자주장</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관련
학생
(가해
추정)</td><td colspan="2">학생주장</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보호자주장</td><td colspan="5"></td></tr>
<tr><td>참고인
관련</td><td colspan="7">(목격자 의견)</td></tr>
<tr><td>책임
교사
의견</td><td colspan="7"></td></tr>
<tr><td>상담
교사
의견</td><td colspan="7"></td></tr>
<tr><td>특이
사항</td><td colspan="7">(성 관련, 장애학생 여부, 치료비 분쟁, 언론보도, 고소 사안 등)</td></tr>
</table>

[서식 1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 개최 동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 개최 동의서

가해자 (학생이 아닌 자)	성 명 : ○○○(정보 파악이 어려울 시, 공란으로 남겨둘 것) 전 화 :
피해학생	성 명 : ○○○ (학년 반 번, 성별) 전 화 :

학교(성)폭력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해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이 원칙이나,

-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조치가 피해학생 측의 동의에 의해서 확정되며,
-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조치가 무효가 되는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본인은(피해학생 측)본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를 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위원회 제소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 학교는 본 동의서를 내부결재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차후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및 각종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19년 ○○월 ○○일

피해학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학교명 :

입회인 성명 : 인성인권부장(담임교사) 등 (서명)

전화 :

[서식 11-4] 담임교사 또는 전담기구 해결 사안 확인서

<담임교사 또는 전담기구 해결 사안 확인서>

확 인 서

관련학생	성 명 : ○○○ (학년 반 번, 성별) 전 화 :
관련학생	성 명 : ○○○ (학년 반 번, 성별) 전 화 :

(담임교사 해결 사안인 경우의 문구)

2019년 ○○월 ○○일 ○○시 ○○분경 인지되어 접수된 ○○○와 ○○○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였고 본 사안에 대해 특별한 학교폭력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상기 ○○○와 ○○○는 전담기구 조사 내용에 동의하며 담임교사 ○○○에게 자체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차후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전담기구 해결 사안인 경우의 문구)

2019년 ○○월 ○○일 ○○시 ○○분경 인지되어 접수된 ○○○와 ○○○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였고 본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 및 처리 과정에 대해 학교로부터 충분히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상기 ○○○와 ○○○는 상호 간에 경미한 사안으로 인정하였고 화해 또한 이루어져 전담기구에서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차후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관련 학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관련 학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입회인

학교명 :

성명 : 인성인권부장(담임교사) 등 (서명)

전화 :

[서식 12-1]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및 비밀 서약서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및 비밀 서약서

성 명			소속	
연락처	근무처		자택	
	휴대전화		E-mail	
위촉기간	2019년 ○○월 ○○일 ~ 2019년 ○○월 ○○일(2년)			
비 고	□학부모 위원, ■외부 전문가 위원, □교원 위원			

상기 본인은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자·가해자·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제22조 1항 등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 학교장 귀하

[서식 12-2] 위촉장

위 촉 장

○○고등학교
교사(학부모 등) ○ ○ ○

위 사람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 2년간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9년 3월 2일

○○고등학교장 ○ ○ ○

[서식 1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명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명부

연번	성명	소속	위촉기간	자격
1	○ ○ ○	○○○학교	2019.○○.○○.~2020.○○.○○	위원장 (교감)
2	○ ○ ○	○○○학교		교 원
3	○ ○ ○	6학년		학부모
4	○ ○ ○	5학년		학부모
5	○ ○ ○	4학년		학부모
6	○ ○ ○	3학년		학부모
7	○ ○ ○	2학년		학부모
8	○ ○ ○	○○경찰서		외부위원 (경찰)
9	○ ○ ○	○○○병원		외부위원 (의사)
10	○ ○ ○	○○상담소		외부위원 (상담사)

[서식 14-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요청서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요청서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제( )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접수번호</td><td colspan="4">2019-01</td></tr>
<tr><td rowspan="2">관련학생</td><td>소속학교</td><td>학년/반</td><td colspan="2">성명</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참석일시</td><td colspan="4">2019. ○○. ○○.(요일) ○○:○○
※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참석 시간을 달리하여 각각 통보</td></tr>
<tr><td>회의장소</td><td colspan="4"></td></tr>
<tr><td>대기장소</td><td>피해학생측</td><td></td><td>가해학생측</td><td></td></tr>
<tr><td>심의대상
사안개요</td><td colspan="4"></td></tr>
</table>

2019년 ○○월 ○○일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인)

○○○학생 보호자 귀하

※ 참고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교폭력 전담기구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진술 의견서**(별지 양식)을 작성하여 ○○○학교로 **자치위원회의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4-2] 서면 진술(의견)서

서면 진술(의견)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 colspan="4">2019-01</td></tr>
<tr><td rowspan="2">관련학생</td><td>소속학교</td><td>학년반</td><td>학생성명</td><td>보호자성명</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td></tr>
<tr><td>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의견</td><td colspan="4"></td></tr>
<tr><td>요구 사항</td><td colspan="4"></td></tr>
<tr><td>기타 사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2019. ○○. ○○.
○○○학생 ○○○ (인)
○○○학생 보호자 ○○○ (인)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귀중</td></tr>
</table>

[서식 14-3] 자치위원회 위원 등록부

2019학년도 제○○회 자치위원회 위원 등록부

2019. ○○. ○○.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순	위원명	서명	비 고
1			위원장
2			
3			
4			
5			
6			
7			
8			
9			
10			
재 적 위 원 수		명	
출 석 위 원 수		명	
불 출 석 위 원 수		명	

[서식 14-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요청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요청서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사항을 집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table>
<tr><td colspan="2">1. 개최일시</td><td colspan="2"></td><td>2. 개최장소</td><td></td></tr>
<tr><td colspan="2">3. 개최사안</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4. 참석자</td><td rowspan="2">학생</td><td>피해</td><td colspan="3"></td></tr>
<tr><td>가해</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학부모</td><td>피해</td><td colspan="3"></td></tr>
<tr><td>가해</td><td colspan="3"></td></tr>
<tr><td>위원</td><td colspan="4">전체위원 ○○ 중, ○○ 참석</td></tr>
</table>

5. 의결 및 요청 사항

①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 ○○○학생 :
- ○○○학생 :
- ○○○학생 :

② 가해학생 선도·징계조치(특별교육 이수 명령, 이수시한 등)
- ○○○학생 :
- ○○○학생 :
- ○○○학생 :

③ 가해학생 학부모(특별교육 이수 명령, 이수시한 등)
- ○○○학생 학부모 :
- ○○○학생 학부모 :
- ○○○학생 학부모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별첨

2019년 ○○월 ○○일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인)

○○○○학교장 귀하

[서식 14-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통보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결정통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에 따른 피·가해학생 조치사항)

1. 가해학생 : ○학년 ○○반 이름: ○○○(성별)
2. 피해학생 : ○학년 ○○반 이름: ○○○(성별)
3. 사안내용(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술) - *2018.○○.○○. 15시경 2학년 5반 교실에서 ○○○학생이 ○○○학생을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입힘*(예시)
4. 자치위원회 개최일시 : 2019년 ○○월 ○○일 ○○시
5. 자치위원회 조치사항 ①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 ○○○학생 : ② 가해학생 선도 조치(특별교육이수 조치 사항 포함) - ○○○학생 : - ○○○학생 : ③ 가해학생 학부모(특별교육이수 조치 사항) - ○○○학생 학부모 : - ○○○학생 학부모 :
6. 조치결정의 이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본 사안을 심의한 결과, 가해학생의 폭력 행위가 하급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중하며, 피해학생이 극심한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학생의 전학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가해학생의 변화를 위해 교육적 환경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학 조치를 결정하는 바임(예시)
【재심안내】 **※ 피해학생**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전라북도청_063-280-2533) **※ 가해학생** - 전학,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전라북도교육청_063-239-3743)
【불복절차 안내】 **※ 국,공립학교**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청구 가능.(행정소송법 제20조) **※ 사립학교**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 가능

2019년 ○○월 ○○일

○○○학교장(직인)

[서식 14-6] 징계(전학, 퇴학) 재심 청구서

징계(전학, 퇴학) 재심 청구서

접수	번호	—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H P			
	주소						
	전(퇴)학 학생	성명		전 소속학교	( ) 중 ,고등학교 ( )학년 ( )반		
피청구인	전(퇴)학 조치 학교명	( ) 중, 고등학교		소재지		학교장 성명	
전(퇴)학 조치 통보서를 받은 날		년 월 일					
청구 사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중

※ 불복절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4항에 의거,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_239-3233)

[서식 14-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예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시나리오(예시)

결재	위원장

2019학년도 제○○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예시)**

○○○학교

일시 : 2019. ○○. ○○.(수)
장소 : 회의실

심의 안건

1. 접수번호 2019 - ○○호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건

(16:00 개의)

▶ **간사**

✔ 안녕하십니까.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교사 ○○○입니다.

✔ 위원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명 중 ○○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학년도 제○○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 금의 심의할 사안은 2019 - ○○호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건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징계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전달

▶ **위원장**

✔ 자치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발언을 위해서는 먼저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본 회의에서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소개

▶ **위원장**

✔ 본 회의에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등이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 제척, 기피, 회피 심의

▶ **위원장**

✔ 간사는 위원 제척, 기피, 회피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본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법률 시행령 제 36조에 근거하여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위원은 본회의에서 제척되며 관련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피 신청을 받은 자치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 또한, 기피 신청 이전에 위 사항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본 위원회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위 사항에 해당되어 제척되거나 회피하신 위원이 있습니까?

▶ **위원들**

✔ 없습니다. **(있는 경우는 제척 및 회피 사유를 밝힌 후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

※ 관련학생 및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참석 당일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위원장은 정회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야 함

☞ 사안 보고(선 조치 보고 포함)

▶ **위원장**

✔ 간사는 금일 심의할 사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2019-○○호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 사안개요, 진행사항, 중점사항 등(학교장 선 조치 여부 포함)
-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 상반된 주장, 기타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내용 등을 보고

✔ 2019-○○호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금일 사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사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 **위원장**

✔ 간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적용되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기본 판단 요소인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한 **각 항목별 판정 점수를 협의하여 다수결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 항목별 다수결로 결정(각 항목에 대한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지 않도록 유의)

✔ 부가적 판단요소인 가해학생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판정 점수에서 제외되는 조치: 2호, 5호

✔ 이 중 2호, 5호 조치는 판정된 점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에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판정 점수와 별개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결정된 조치 중 하위 조치를 병과 할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을 검토한 후, 가해학생의 조치가 최종 결정됩니다.

✔ 이상으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사안보고, 관련자료, 고시 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피해추정 학생 측의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학생 측 의견 진술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본 사안으로 학생은 물론 보호자께서도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과 보호자 분 맞으십니까?

✔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 자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 자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진술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발언을 위해서는 먼저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본 회의에서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때 편안한 맘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피해사실 확인(특히, 가해 관련 측 주장과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
-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와
  부가적 판단요소(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관련 확인
-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략)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오늘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학생과 보호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피·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의 장에게 집행을 요청할 것이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이 서면으로 그 결과를 송부하게 됩니다.

✔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 전라북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280-2533)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생과 보호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조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 가해학생 측 의견 진술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본 사안으로 학생은 물론 보호자께서도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과 보호자 분 맞으십니까?

✔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 자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 자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진술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발언을 위해서는 먼저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본 회의에서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때 편안한 맘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가해사실 확인(특히, 피해 관련 측 주장과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
-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와
  부가적 판단요소(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관련 확인
-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1호~9호 등)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략)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오늘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학생과 보호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피·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의 장에게 집행을 요청할 것이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이 서면으로 그 결과를 송부하게 됩니다.

✔ **본 위원회의 가해학생 전학, 퇴학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239-3743)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위원회의 가해학생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전학, 퇴학 제외)**
- 국, 공립학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239-3233)에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 사립학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사립학교 행정심판, 행정소송 불가)

✔ ○○○학생과 보호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조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 참고인 진술(담임, 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 조치결정을 위해 자치위원회의 권한으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담임교사: 관련학생의 교우관계, 사건 발생 이후 학교생활태도, 반성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상담(보건)교사: 관련 학생의 심리 상태, 피해정도 및 치료 상황 등을 확인
‣ 그 외 의사, 법률전문가 등도 필요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언을 구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자치위원회의는 비공개이므로 참고인은 필요한 때에만 회의에 출석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회의에 참석하게하거나, 조치결정에 관여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함

▶ **위원장**

✔ 다음은 학교 측 관련 교사의 의견 진술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사 되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때 편안한 맘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오늘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사안 여부 협의

▶ **위원장**

✔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학교폭력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학생, 보호자, 담당교사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이 아닐 경우: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
‣ 학교폭력일 경우: 피·가해학생 조치를 위해 심의 진행

✔ 금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학생이 ○○학생에 대한 행위는 ○○학생에게 신체 및 정신 상 피해를 유발한 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학교폭력인 경우)
✔ 금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 결과 ○○학생이 ○○학생에 대한 행위는 ○○학생에게 신체 및 정신 상 피해를 유발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학교폭력 아님' 결정으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 학교장 피해학생 선 조치 보고 및 가해학생 선 조치 추인 협의

▶ **위원장(선 조치가 내려진 경우만 해당)**

✔ 법률상 피해학생의 학교장 선 조치는 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가해학생 선 조치는 본 위원회의 추인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추인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인된 가해학생의 선 조치는 자치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선 조치를 고려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최종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간사

(중략)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선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 출석위원 ○○명 중, ○○명이 동의하여 출석이원 과반이 되었으므로 '학교장 선 조치에 대한 추인'을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어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의 선도 조치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

※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 시 유의사항

-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 16조 6항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보호조치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상담, 치료 등 비용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위원장

✔ 먼저 ○○○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심의하겠습니다.

✔ 위원님들은 현재 피해학생에게 꼭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제○호로 결정되었으며, 피해학생 및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3타)**

☞ 가해학생 선도 조치 심의

▶ 위원장

✔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협의하겠습니다.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조치에서 2호, 5호 조치는 제외됨)

-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협의하여 판정 점수 결정)
- '학교폭력의 지속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협의하여 판정 점수 결정)
- '학교폭력의 고의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협의하여 판정 점수 결정)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협의하여 판정 점수 결정)
- '화해 정도'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협의하여 판정 점수 결정)

✔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판정 점수를 종합하면,

- 심각성 ○○점, 지속성 ○○점, 고의성 ○○점, 반성 정도 ○○점, 화해 정도○○점, 총 ○○점으로 제○호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 판정 점수에 의해 제○호의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됐지만 부가적 판단요소(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가해학생의 조치를 경감 혹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측 진술 및 사안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해학생은 장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에는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가중 조치할 수 있음)

(중략)

✔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다음으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가해학생 선도 가능성에 따라 조치를 경감할 수 있음)

✔ 학교폭력 전력,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화해)의 정도, 진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이어서 제17조 제2호 접촉금지,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호와 5호 조치는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른 판정 점수가 아닌 필요에 따라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조치입니다.**
- **피해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2호 조치를,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각각의 조치를 별도로 내릴 수 있습니다.**

✔ 2호 조치, 5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2호, 5호 조치는 기간을 반드시 명시)

(중략)

✔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화해(반성) 정도, 개전 가능성 및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호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 출석위원 중 ○○위원의 찬성으로

- 선도 가능성이 인정되어 ○○호 조치로 감경되었으며,
- 선도 가능성이 인정되어 ○○호 14일에서 7일로 감경되었으며,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임이 인정되어 ○○호 조치로 가중되었으며,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임이 인정되어 ○○호 7일에서 14일로 가중되었으며,

✔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교육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어

- 제2호 접촉금지 ○○일, 제5호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시간(회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 외에 자치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하위조치를 병과할 수는 있으나 적용별 세부 기준 및 선도 가능성과 2호, 5호 처분의 필요성 등을 협의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하위 조치가 병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법 제17조 제3항, 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2~4호, 6~8호 처분을 받을 경우

-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 추가되고
-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 부과(5호) 또는 추가되는 경우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 본 위원회에서는 기간과 기관을 협의하여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 아닌 심리치료가 부과, 추가되는 경우 보호자 특별교육 미 발생

- 심리치료는 소아정신과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정신적 치료 행위로써 신중을 기해서 조치
  - 우울증, 분노장애, 정서장애, 품행장애 등

✔ 간사는 우리교육청 특별교육기관 및 이수 기준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2019년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계획에 따르면, (중략)

▶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각각 특별교육 ○○시간을 추가하며 우리교육청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이수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가해학생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리치료 ○○시간을 추가하며 정신과 상담이 가능한 병원에서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
✔ 금일 심의한 사안에 대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9-○○호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호 ○○시간(일), 제○○호 ○○시간(일)이며
- 추가조치로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시간(회기), 보호자 특별교육 ○○시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간사는 자치위원회 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해학생 14일, 피해학생 7일 이내에 본 조치가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학생 및 학교의 장이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본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록 검토위원 선출

▶ **위원장**
✔ 본 위원회 회의록 검토위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 회의록 검토위원으로 ○○○위원, ○○○위원을 추천해 주셔서 두 분을 회의록 검토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회 회의록 검토위원으로 ○○○위원, ○○○위원을 선정하고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검토 위원에게 서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9-○○호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간사는 담임해결 혹은 전담기구에서 자체 해결했던 사안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임교사 해결 사안이 있는 경우

▶ **간사**
✔ 2019-○○호 사안은 지난 ○○월 ○○일에 발생하여 신고대장 접수 후, 관련학생 측 보호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학교폭력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보호자들이 조사 결과에 동의하여 담임교사 해결 사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차후,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자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담기구 해결 사안이 있는 경우

✔ 2019-○○호 사안은 지난 ○○월 ○○일에 발생하여 신고대장 접수 후, 관련학생 측 보호자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이후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였고 본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 및 처리 과정에 대해 관련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상호 간에 경미한 사안으로 인정하였고 화해 또한 이루어져 전담기구 해결 사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 차후, 관련학생 및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자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는 사안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 주시고 차후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전담기구의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자치위원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9-○○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봉 3타)

(19:00 폐회)

작성일: 2019. ○○. ○○.

검토위원 (서명)	홍 길 동	가 나 다

	출석위원 ○○명	참고인(기타참가자) ○○명
재적위원 ○○명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담임교사 ○ ○ ○ 책임교사 ○ ○ ○ 상담교사 ○ ○ ○ 목격학생 ○ ○ ○

[서식 15] 아동학대 사안 보고

※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처리되어 피해자 보호를 받아야 함.

(아동학대) 사안 보고

보 고 구 분	□최초 □최종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 학교	학교장 직인

구 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기타
체크(○)	○			○	
					<중복체크>

학 교 명 :	○ ○ 학교	교장	성명: ○ ○ ○ H·P: 000-0000-0000	교감	성명: ○ ○ ○ H·P: 000-0000-0000
피해 학생	(학 교) (학 년) (성 명)				
	(학 교) (학 년) (성 명)				
발생 일시 접수 일시	2019.00.00. 2019.00.00.	보고 일시	최초: 2019.00.00. 최종: 2019.00.00.		

피해 사항 및 주요 내용	※ 자세하게 작성 요망

특이사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언론보도 및 경찰 신고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등

자치 위원회 개최(예정)일	2019년 00월 00일 00시 ※ 친권자(보호자)가 가해자일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생략가능

□ 보호조치 및 처벌 현황

대 상	조치 사항	조치 일자	조치 기관
피해학생	피해아동 일시보호	2019.00.00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가 해 자	경찰조사 진행 중	2019.00.00	덕진경찰서 등

□ 향후 계획

학 교	상담 등의 보호 조치로 인한 출석인정, 비밀전학 업무 추진 등
교육지원청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향후 보호조치 당부 등
전 문 기 관	상담 등의 보호 조치 지속적인 실시 등

작성자	학 교	직위 :	성명 :	전화 :
	교육지원청	직위 :	성명 :	전화 :

[서식 16] 중대 사안 보고 형식

00학교 (　　)사안 보고

○○○학교 /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락처: 010-0000-0000)

▣ 사안개요

□

□

□

▣ 경과

□

□

□

▣ 경찰조사 내용, 언론 보도 내용 등

□

□

□

▣ 학교 조치 사항

□

□

□

▣ 교육지원청 조치사항

□

□

□

▣ 향후 대책

□

□

□